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355-01

2018. 11.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임 소 영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황 의 식 선임연구위원

요 약

□ 농업종합자금

○ 농업종합자금은 정책자금의 지원 효율성 제고, 시장 흐름에 발맞춘 자금 지원,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운영을 모토로 도입되어 농업정책자금의 새로운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 타 농업정책자금과 비교할 때 민간 활용도가 높고 시장성·사업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술금융의 농업 분야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감당함.

○ 그러나 농업종합자금이 1999년에 시작된 후 2004년에 한 차례 심층평가를 거쳤으나 그 후 농업환경 및 금융환경이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운영 방향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단편적 개편만 계속되었음.

○ 따라서 농업종합자금이 본래의 도입 목적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지, 자금 지원 조건과 규모는 적정한지,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함.

○ 농업종합자금은 엄격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 농가의 부실화를 막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범위가 확장되면서 세부사업의 수도 증가하고 지원 대상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사업 구조가 복잡해지는 현상이 나타남.

- 최근 농업 융·복합화, 유통 및 수출확대 등으로 농업영역이 확대되면서 농업종합자금은 생산 분야를 넘어서 가공·유통·수출 분야로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짐.

○ 따라서 사업대상의 성격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보다 단순화된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농업종합자금의 본연의 지원 대상이 생산분야의 경영체인 만큼 농업종합자금의 농산물가공 및 수출지원 등에 대한 지원은 농업 생산분야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쌀 가공산업지원사업은 가공사업지원과 통합하여 일관성을 유지함.

○ 농업종합자금의 지원범위가 생산 분야에서 가공 및 수출로 확대되면서 지원대상에도 일반 식품기업이 포함되고 있음.

- 일반 식품기업에 대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됨.

○ 원칙적으로는 농식품 기업에도 농업종합자금의 지원을 허용하되 농업 부가가치 제고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강화하여 해당 농식품업체에 대한 지원 효과가 궁극적으로 농산물 생산분야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횟수에 제한이 없어 일부 경영체가 고정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됨.

○ 농식품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고정화되어 특정 기업체에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금지원의 잔액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일반 농식품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금지원을 한 후 단계적으로 자금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정 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사업실적이 양호한 기업은 농업종합자금 외 일반 금융기관의 융자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타 분야나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 졸업제도를 참고하여 농업종합자금의 고정화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농업종합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관에 매년 경영평가를 받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영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출기관은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조사 내용과 결과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단순 자금관리에서 정책자금의 운용과 관련한 시사점을 찾는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이차보전 금리가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이차보전액 증가에 유의하여 금리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농업종합자금의 인지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농협은행,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의 출입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농업종합자금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대출담당자는 종합자금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
- 이 중에서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서류들은 과감하게 줄이고 금융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내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불편함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회생자금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지속적인 자금 수요 감소로 인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농업경영회생자금의 담당자가 과거 자금의 문제에 대해서 취급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금 대환시 농신보와 대손보전기금에 면책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손보전기금의 건전성을 전제로 신용대출을 대손보전기금 대상 자금으로 편입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농업종합자금과 같이 정책자금의 지원 한도, 농업용 부채 현황, 대규모 자금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농업경영회생자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인상폭은 현재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에서 두 배로 증가한 15억 원과 30억 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팜 및 수출자금 등 대규모 자금의 투자추이를 지켜보고 추후 한도 추가 증액을 검토할 수 있음.

○ 대출심사 단계를 축소하고 일선조합의 심사의무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4단계(일선조합-시·군지부-영업본부-중앙본부)에서 3단계(일선조합 및 시·군지부-영업본부-중앙본부)로 심사단계를 축소하고 일선조합과 시·군지부의 심사의무기준을 상향 적용함.

○ 농업경영회생자금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합사업으로서 일부 농가는 두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데 두 사업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홍보의 수준을 넘어 신청자가 타 사업도 함께 신청하게 하는 수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
- 농협은행은 신청 농가의 자산 및 부채 정보를 활용하여 채무 조정 컨설팅을 수행하고 신청농가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함.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 5

제2장 농업종합자금의 역할 정립과 지원 효율화 방안

1. 농업종합자금의 역할과 목적 ····· 7
2. 농업종합자금 현황 ····· 12
3. 농업종합자금 평가 ····· 33
4. 농업종합자금 개선방안 ····· 54

제3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방안

1. 농업경영회생자금 운영 체계 ····· 65
2. 농업경영회생자금 운영 실적과 문제점 ····· 71
3.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방안 ····· 86

제4장 요약 및 결론

1. 농업종합자금 개선 방안 ····· 91
2. 농업경영회생자금 개선 방향 ····· 94

부록1 타산업 및 해외농업분야 정책금융 운영사례

1.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 97
2. 외국의 농업분야 정책금융제도 ····· 112
3. 시사점 ····· 125

부록2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1. 일반사항과 농가경제 기본현황 ····· 127
2. 농업종합자금 이용 실태 및 의견 ····· 132
3. 농업종합자금 신청 농가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133
4. 농업종합자금 비 신청 농가의 의견 ····· 140
5. 농업종합자금 대출조건의 개선사항(자금 신청여부 관계없음) ····· 142
6. 향후 투자수요 ····· 143

참고문헌 ····· 147

표 차례

제2장

<표 2-1> 농업종합자금 통합 내역 ····· 10
<표 2-2>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 ····· 11
<표 2-3> 세부사업별·용도별 지원 현황 ····· 13
<표 2-4> 세부사업별·용도별 지원 현황 ····· 15
<표 2-5> 세부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 ····· 17
<표 2-6> 세부사업별 지원 한도 ····· 18
<표 2-7> 2018년 종합자금 이차보전 소요 예산 산출내역 ····· 18
<표 2-8> 농업종합자금 신청시 제출서류 ····· 20
<표 2-9> 경영실태조사 완료 경영체수 ····· 23
<표 2-10> 경영실태조사 대상자의 사업상태 ····· 24
<표 2-11> 조사대상 경영체 전체 자산 및 부채현황 ····· 24
<표 2-12> 조사대상 경영체 전체 손익현황 ····· 25
<표 2-13> 농업종합자금 지원 계획 및 실적(신규 대출) ····· 26
<표 2-14> 자금별 평잔액 ····· 27
<표 2-15> 수출 및 규모화 자금 신규 대출 실적 ····· 27
<표 2-16>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잔액 현황(2018년 6월 말) ····· 28
<표 2-17> 자금별 이차보전액 추이 ····· 30
<표 2-18> 농업종합자금 용도별 지원 실적(신규 대출) ····· 31
<표 2-19> 개인/법인의 분야별 농업종합자금 신규 대출 ····· 32
<표 2-20> 자금별 대출심사 방식 ····· 35
<표 2-21> 관련 법령 상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 ····· 38
<표 2-22> 자금별 연체율 ····· 42
<표 2-23> 농안기금 융자사업 대출조건 ····· 43

<표 2-24> FTA기금 융자사업 대출조건 ····· 45
<표 2-25> 채무자별 운전자금 지원 횟수 ····· 51
<표 2-26> 농업종합자금의 특징 ····· 55

제3장

<표 3-1> 경영위기 유형별 자금용도 및 대출유형 ····· 67
<표 3-2> 농업경영회생자금 신청시 제출서류 ····· 69
<표 3-3> 연도별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실적(2017년 12월 말 기준) ····· 71
<표 3-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예·결산 ····· 81
<표 3-5> 사업 간 대출조건 비교 ····· 83
<표 3-6> 사업별·자금규모별 지원대상 심사 주체 ····· 85
<표 3-7> 농가유형별 농업용 부채 규모 ····· 87

부록1

<부표 1-1>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요약 ····· 99
<부표 1-2> 신용등급별 정책금융 분담 구조 ····· 100
<부표 1-3>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 ····· 101
<부표 1-4>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계속) ····· 102
<부표 1-5>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계속) ····· 103
<부표 1-6>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금액별 업체 수 ····· 105
<부표 1-7>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횟수별 업체 수 ····· 105
<부표 1-8> FSA 융자 지원 대상 ····· 114
<부표 1-9> FSA의 융자 프로그램 개요(2018) ····· 115
<부표 1-10> FSA 융자 실적 ····· 116
<부표 1-11> 일본의 농업정책자금 개요 ····· 121
<부표 1-12> 일본은 정책금융자금의 금리(2018. 08. 20. 기준) ····· 123

부록2

<부표 2-1> 설문조사 참여농가 연령 및 영농경력 교차표 ····· 128
<부표 2-2> 설문조사 참여농가 농사종류 ····· 128
<부표 2-3> 설문조사 참여농가의 농업 현황 ····· 129
<부표 2-4> 설문조사 참여농가의 농업소득 및 자산 현황 ····· 131
<부표 2-5>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인식여부 ····· 132
<부표 2-6> 최근 5년간 시설 및 운전자금의 목적으로 농업종합자금의 신청여부 ····· 132
<부표 2-7> 농업종합자금 대출금의 용도 ····· 133
<부표 2-8> 농업종합자금 대출조건과 대출금액 ····· 134
<부표 2-9> 농업종합자금을 선택한 이유 ····· 134
<부표 2-10> 농업종합자금 신청과정의 어려운 점 ····· 135
<부표 2-11> 농업종합자금 제출 서류 중 불필요한 항목 ····· 135
<부표 2-12> 농업종합자금 사업계획서 작성의 만족도 ····· 136
<부표 2-13> 농업종합자금으로 신청한 자금의 경우 대출실행까지 걸린 기간 ····· 136
<부표 2-14> 농업종합자금 수령 후 경영실태조사 실시 유무와 농가경영 개선에 도움된 정도 ····· 137
<부표 2-15> 농업종합자금 대출과정에서 담보심사에 대한 만족도 ····· 137
<부표 2-16> 농업종합자금 운영에 있어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 ····· 138
<부표 2-17> 농업종합자금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 139
<부표 2-18>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 140
<부표 2-19> 농업종합자금 외 타 융자자금 신청여부 및 신청사유 ····· 141
<부표 2-20> 추가적으로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였으면 하는 자금의 필요 여부 ····· 142
<부표 2-21> 향후 농업에 대한 전망 ····· 143
<부표 2-22> 향후 5년 내에 농업에 투자할 의향과 투자금액 ····· 143

<부표 2-23> 향후 5년 내에 농업에 투자할 분야 ····· 144
<부표 2-24> 농가가 원활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기 위한 개선사항 ····· 145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대출업무 흐름도 ····· 19
<그림 2-2> 기관별 농업종합자금 지원 역할 ····· 22
<그림 2-3> 농업종합자금 연도별 이차보전 예산 ····· 25
<그림 2-4> 분야별 농업종합자금 점유율(신규 대출) ····· 31
<그림 2-5> 농업종합자금 지원 범위 ····· 36
<그림 2-6> 농작물 유형별 생산액과 대출실행금액 비중 ····· 41
<그림 2-7> 금리 추이 ····· 47
<그림 2-8> 농업종합자금의 위치 ····· 56
<그림 2-9> 금리방식 별 이차율 계산 방식 ····· 61

제3장

<그림 3-1>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절차 ····· 70
<그림 3-2> 농가 부채 추이 ····· 73
<그림 3-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체계 ····· 79
<그림 3-4> 자산대비 부채비율별 가용자금 현황 ····· 82
<그림 3-5>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매매사업 지원방식 비교 ····· 83

부록1

<부도 1-1> 중소기업 정책금융 체계 ····· 98
<부도 1-2> 신용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지원절차 ····· 108
<부도 1-3> 기술보증기금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지원절차 ····· 111
<부도 1-4> 미국 농가부채의 기관별 비중 ····· 113
<부도 1-5> 일본의 농업금융 지원기관 ····· 119

부록2

<부도 2-1>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시 농신보 신용보증의 이용여부 및 농신보 심사평가 만족도 ····· 138
<부도 2-2> 농업종합자금 대출조건의 현실가능성 유무 및 현실성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 142
<부도 2-3> 투자자금으로서 농업종합자금의 이용 여부 및 농업종합자금 외 투자자금 마련 방안 ····· 144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기존의 농업정책자금 지원 체계가 가지고 있는 행정 중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금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농업정책금융의 발전 방향으로 정한 것을 배경으로 농업종합자금이 도입되었음.

- 농업종합자금은 정부 주도의 자금 지원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농업정책자금 지원으로 전환을 모색하며 1999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음.

○ 과거 농업정책자금은 무수히 많은 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개별 사업의 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며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신청에서 자금지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금 이용 농업인의 자금규모와 대상 면에서 시장동향과 일치하지 않는 일이 많았음.

○ 그 결과 지원 대상 농가의 부실화가 나타나고 자금 지원의 비효율성이 확대되는 등 자금 지원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특히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지원이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중장기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농업경영체의 수요에 부응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인 농업인의 자율적인 경영계획에 기초하여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신속히 지원되도록 함.

○ 또한 민간 대출기관의 자금 중개기능인 심사 및 평가를 통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계획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여 부실화 가능성을 축소하고자 농업종합자금을 설계하였음.

○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정책자금의 지원 방식을 정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부 실패를 축소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특징임.
- 향후 농업정책금융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정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 금융기관이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사후의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금 공급 및 경영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이 커짐.

○ 그러나 오랫동안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사업 개편만 지속되었음.
- 농업종합자금의 성과평가는 도입 6년 째인 2004년에 한 차례 이루어진 이후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진 바 없음.

○ 그 사이 한·미 FTA의 추진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보조지원 및 농업생산 외 지원이 확대되었으므로 농업종합자금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

○ 그 결과 예산 체계, 운영 방식 등이 농업종합자금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신축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농업정책 방향에 합치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타 사업에 예속된 자금의 지원사업이 농업종합자금으로 이관되면서 농업종합자금의 예산 구조가 복잡해지고 농업종합자금 고유의 특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금리, 대출한도, 지원 대상자의 범위 등에서 현실 여건에 견주어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농업인 개인보다는 법인(특히 식품가공)에 자금 지원이 집중되어 농업경영체 육성 자금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 따라서 농업정책자금에서 농업종합자금의 의의와 특성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장기적 발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비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산업 구조 변화, 금리 여건 등 금융시장 변화 등 농업 투자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농업종합자금이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형태, 지원 조건, 지원 체계, 사후 관리 등이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한 부채대책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최근 융자계획(600억) 대비 지원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율: ‘11(44%) → ’12(32.7%) → ‘13(45.2%) → ‘14(22%) → ’15(18.6%) → ‘16(12.5%) → ’17(8.2%)

○ 따라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율 하락의 원인을 검토하고 행정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농업경영회생자금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의 자금 수요 변화, 경합자금의 존재 등 자금이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대출 조건, 대출 대상자 등에 있어서 자금 지원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농업종합자금의 역할 수립과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농업종합자금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재정립함.
- 농업종합자금의 운영체계가 종합자금의 역할과 도입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지, 농업여건과의 괴리는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율 저하 요인을 검토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

2. 선행연구

○ 농업종합자금을 포함한 농업정책금융 전반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음.

- 박성재 외(2000)는 농업 분야의 상호금융과 정책금융을 포함하여 농업금융 제도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었으며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특히 도입 초기인 농업종합자금을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사업 평가 담당자의 역량제고와 철저한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강종만 외(2004)는 농업정책금융의 개선 방안로서 농업정책금융 취급 금융기관 확대, 농업정책자금 관리 전담 기관 설립, 농업정책자금 재원 확대 및 이차보전제도 개선, 농신보의 보증료율 상향 조정 등 농신보의 신용보증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 김미복 외(2014)와 김미복·김윤진(2015)은 농업정책금융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음. 김미복 외(2014)는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금리를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중복 사업의 조정, 지원대책 다양화, 사업성 중심의 지원 강화, 기술금융 활성화, 농신보의 역할 강화 등을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김미복·김윤진(2015)은 정책금융의 목표 그룹을 금리혜택, 담보부족 보완, 투자로 구분하여 집단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융자 조건 개선, 직접대출, 신용보증, 이차보전 등 금융 지원 형태를 다양화하여 지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음.

○ 농업종합자금과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 중반에 일부 이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농업종합자금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음.

- 박성재 외(1998)는 농업종합자금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음. 농업정책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종합자금제를 검토하였으며 구체적 운영체계를 검토하였음.
- 서상택 외(2004)에서는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농협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농업종합자금의 성과와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출 담당자들은 농가 신용에 따른 금리 차등화, 대출규모 상·하한 설정, 시설자금의 농민 부담비율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현재의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과 경영지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황의식 외(2004)에서는 농업종합자금 도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농업종합자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농업종합자금은 과거 정부 주도의 자금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한 자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농업종합자금은 지원 농가의 부실화 방지, 시장 상황에 맞춘 자금지원, 자금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농업정책금융의 혁신 촉진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소액 위주의 자금 지원, 행정 절차상의 애로사항, 까다로운 자금 지원 조건, 경영컨설팅기능의 미숙, 전체 농업정책금융 축소 야기 등의 문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됨.
- 권영근 외(2006)는 농업종합자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가공육성자금과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성별영향평가를 담고 있음. 이 연구는 농업종합자금이 보조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융자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으며 과거 보조 중심의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의 수요와 관계없이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진데 반해 농업종합자금은 자금 수혜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고 있음. 농업종합자금의 도입 이후 농산물 가공업체의 시설 투자는 현저히 줄었는데 이는 농업종합자금이 융자 지원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함.

제 2 장

농업종합자금의 역할 정립과 지원 효율화 방안

1. 농업종합자금의 역할과 목적

1.1. 농업종합자금의 도입 목적과 배경

○ 1992년부터 추진된 42조로 된 규모의 구조개선사업으로 농업 분야의 투자 재원의 양적 확보는 이루어졌으나 지원대상 사업 및 사업자 선정의 실패로 인해 지원 농가의 부실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지원 농가의 부실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아래와 같음.
- 정부주도의 사업 및 자금 지원 계획 수립은 실제 시장에서의 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은 부적격 대상자가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함.
- 자금신청에서 지원까지의 기간이 길어 자금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았음.
- 지원농가에 대한 경영컨설팅 부재로 인하여 지원농가의 사업능력 제고에 한계를 보임.

○ 이에 정부 주도 방식의 자금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 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자금 수요자의 자율적인 경영계획 하에서 자금 공급, 민간 금융기관의 선별기능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종합자금이 대안으로 부상함.
-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적기에 공급하고자 한 것임.

○ 도입 당시 농업종합자금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임.
- 기존의 세분화되어 있는 자금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농가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자금을 지원함.
- 대출기관이 대출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여 사업성을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적격 대상자 지원을 최소화하고자 함.
- 대출심사와 경영컨설팅을 연계하여 농가의 경영능력을 제고함.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출범한 농업종합자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 품목별·기능별 자금 지원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게되어 정부가 아닌 농가의 선택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정책금융의 대상자 선정 권한이 행정기관에서 민간 대출기관으로 이관되어 농업경영체의 사업성 및 상환능력이 자금 지원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됨.
- 정책금융의 재원 통합을 전제로 운영되는 농업정책의 역할 변화를 추구함.

1.2. 농업정책금융에서 농업종합자금의 역할과 특성

○ 농업종합자금은 개별 사업으로 산재되어 있는 자금을 하나의 자금으로 통합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금임.

○ 이에 농업종합자금은 지원자금의 효율화를 위하여 1999년도에 23개 사업(채소, 과일, 5대 축산)을 통폐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타 자금을 지속적으로 통합하였음.

- 2000년에 원예·축산 분야를 통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됨.
- 농기계 구입자금은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통합되어 2011년에는 모든 농기계 구입자금이 농업종합자금에 편입되었음.
- 또한 농기계생산, 무기질비료원료구입지원사업,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사업 등 농업 생산 외에도 농업용 기자재 사업도 지원 대상에 편입됨.
- 농산물 가공사업은 2004년부터 종합자금으로 편입되어 원예·특작 분야의 가공산업까지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대상이 됨.
- 관광농원 및 농촌민박 사업은 2003년부터 농업종합자금에 포함됨.
- 2017년에는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됨.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은 2009~2010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종합자금에 편입되었는데 농업법인·농가의 시설 투자를 지원하여 수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 농업종합자금의 수출 및 규모화 자금은 2014년을 기점으로 농업(법)인 뿐만 아니라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 기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천억 원이던 대출상한이 폐지됨.
- 이는 기업형으로 성장하는 농업경영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 2018년에는 수출 및 규모화 및 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해 6,000억 원으로 대출한도가 다시 설정됨.

○ 이처럼 자금 통합 범위가 넓어지면서 농업종합자금은 자금규모 면에서도 농업정책자금 중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 농업종합자금은 전체 이차보전 정책자금 예산에서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RPC 운영자금, 농축산 경영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2018년도 총 평잔액은 15조 7,899억 원이며 그 중 농업종합자금은 6조 1,895억 원으로서 전체 평잔액의 39.2%를 차지하

는 것으로 추정됨.

- 이차보전 사업의 2018년도 융자규모는(계획) 총 7조 2,774억 원이며 그 중 41.3%인 3조 26억 원이 농업종합자금임.
- 농업종합자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융자사업의 2017년 대출잔액은 2조 7,504억 원(농안기금)과 5,837억 원(FTA기금)임.

〈표 2-1〉 농업종합자금 통합 내역

연도	통합내역
1999	17개 농·축협에서 시범사업 실시
2000	원예특작 · 축산분야의 종합자금을 통합하여 전국 확대 실시
2003	3천만원 이상 농기계구입, 관광농원 및 농촌민박 통합
2004	2천만원 이상 농기계구입, 농기계생산, 신규후계농육성, 토양객토, 농촌가공 통합
2005	1천만원 이상 농기계구입, 고품질우량종자개발 통합
2009	수출 및 규모화, 꿀 · 녹용가공 신설
2011	1천만원미만 농기계구입, 중고농기계구입, 수리용부품장비 통합
2013	수출 및 규모화사업자금 및 농산물가공사업자금 대출대상 확대
2015	무기질비료원료구입지원사업
2017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지원
2018	스마트팜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 농업종합자금은 타 이차보전 사업에 비해 지원범위가 넓음.

- 농업종합자금과 비교 가능한 사업은 농축산경영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우수후계농추가지원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첨단온실신축지원자금임.
- 이들 자금의 지원 범위는 특정 분야, 특정 용도,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음.
- 반면 농업종합자금은 원예·축산의 생산을 포함, 농업 전후방 산업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자금의 용도도 시설·개보수·운전자금을 모두 포괄함.

〈표 2-2〉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

정책자금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축산경영자금	**16,546**	**8.4**	**25,911**	**13.4**	**25,935**	**12.5**
재해농가이자감면	2,090	1.1	876	0.5	468	0.2
재해복구융자금	941	0.5	637	0.3	391	0.2
RPC운영자금	29,537	15.0	27,054	14.0	26,423	12.7
농업종합자금	**75,248**	**38.3**	**71,172**	**36.7**	**83,193**	**40.0**
농촌주택개량자금	28,692	14.6	25,051	12.9	29,799	14.3
협동조합합병자금	912	0.5	1,846	1.0	2,129	1.0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6,595**	**3.4**	**7,922**	**4.1**	**15,417**	**7.4**
우수후계농추가지원자금	**6,579**	**3.4**	**6,199**	**3.2**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5,080**	**2.6**	**6,785**	**3.5**	**9,534**	**4.6**
사료구매자금	**4,396**	**2.2**	**1,411**	**0.7**	**101**	**0.0**
긴급경영안정자금	3,681	1.9	2,200	1.1	1,093	0.5
도축가공업체지원자금	2,588	1.3	2,041	1.1	2,015	1.0
축사시설현대화자금	**4,915**	**2.5**	**5,323**	**2.7**	**5,684**	**2.7**
첨단온실신축지원자금	**3,472**	**1.8**	**4,048**	**2.1**	**-**	
축산경영종합자금	3,935	2.0	3,834	2.0	3,921	1.9
인삼약용작물계열화	675	0.3	1,124	0.6	1,551	0.7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452	0.2	449	0.2	286	0.1
정책자금 이차보전 전체	196,334	100.0	193,883	100.0	207,940	100.0

주: 우수후계농추가지원자금과 첨단온실신축지원자금은 2018년에 각각 후계농육성자금과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됨.
자료: 농식품부. 『2018년 예산 및 기금 운용 사업 설명자료』

2. 농업종합자금 현황

2.1. 운영현황

2.1.1. 지원 용도

○ 농업종합자금의 용도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으로 구분됨.

○ 시설자금은 아래와 같이 세분됨.
- 원예·축산분야 생산 및 재배시설의 설치, 시설과 연관된 소요자금
- 자가배합사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단, 판매목적 시설자금 및 남은 음식물을 활용한 사료생산시설 제외)
- 토지매입자금
- 농업정책자금이 기 지원된 시설물 이외의 기존 생산·재배 시설물 구입자금
- 관광농원·농촌민박·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설치 자금
- 농기계보관창고 시설설치 자금
- 농기계생산자금(농업용 기계·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 및 건축비)
- 농산물가공사업 시설(가공과 연계된 유통·저장시설 포함)설치 및 기존시설물 구입자금
-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육·채종시설 등)설치 자금
- 천적 및 곤충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 및 규모화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 및 재배시설의 스마트팜(일반, 청년농업인) 설치, 증축, 기존 생산·재배 시설물 구입자금

○ 개보수자금은 아래와 같이 세분됨.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중고장비 포함) 구입자금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농어촌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로서 사후관리 기간(5년) 경과 후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농기계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스마트팜(일반, 청년농업인) 지원자금

〈표 2-3〉 세부사업별·용도별 지원 현황

세부사업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	○	○	○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	○	○	×
농기계보관창고사업1)	○	×	×	×
농기계생산사업2)	○	×	○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3)	×	○	○	×
농산물가공사업	○	○	○	×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	○	×
천적 및 곤충산업 육성사업	○	○	○	×
꿀·녹용가공산업육성사업	×	×	○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	○	○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	○	×
우수기술사업화지원	○	○	○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	×	○	×
스마트팜 지원사업	○	○	○	×

주: 1) 농기계보관창고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기존 시설자금 제외)
2) 농기계 생산시설 설비자금 및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자금 지원(기존 시설·운전자금 지원불가)
3) 기계수리용 장비지원자금, 농기계 수리용 부품확보자금(기존 개보수·운전자금 지원불가)
자료: 농협은행. 『2018 농업정책자금 대출업무방법』

○ 운전자금은 원예·특작·축산 분야의 농업경영체가 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과 타 분야의 운영자금을 포함함.
-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축입식, 농·축산물 매취에 소요되는 자금은 제외)
-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 입식자금
- 토지임차자금(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자금
- 스마트팜(일반,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운영자금

○ 농기계자금은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임.

○ 용도별 자금은 지원분야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음.
- 지원분야는 총 13개의 세부사업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부 세부사업은 시설자금 또는 개보수자금을 지원하지 않음.
- 농업종합자금 사업 초기에는 원예·축산 분야 재배 생산사업의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만으로 자금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여러 자금이 통합되면서 자금의 용도와 지원 분야가 확대되었음.

2.1.2. 지원 대상

○ 농업종합자금의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박·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생산사업자, 농기계수리사업자, 농산물가공사업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자, 천적 및 곤충생산업체, 꿀·녹용가공사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무기질비료생산업체, 스마트팜 사업자임.

○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의 지원대상자는 해당 분야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전체임.

○ 농산물가공사업자는 농·축·임산물을 가공(유통, 저장 포함)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음의 경영체를 포함함.
- 자가 생산 농·축·임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농식품부 승인)
-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 운영 업체(농식품부 승인)
- 주원료를 국산 농·축·임산물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 및 생산자 단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 여기에서 국산 농·축·임산물 주원료 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단순가공업의 경우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80% 이상 사용하여야 함.
- 식품가공업의 경우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50% 이상 사용하여야 함.

〈표 2-4〉 세부사업별·용도별 지원 현황

세부사업	지원 대상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원예·축산물 생산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일반농가 및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생산사업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농기계수리업체
농산물가공사업	농·축산물가공사업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육종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천적 및 곤충산업 육성사업	천적생산 및 곤충사육 사업자
꿀·녹용가공산업육성사업	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자와 농산물가공사업자 중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신용평가 등급 5C이상인 업체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쌀 가공식품 생산 업체, 정부 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우수기술사업화지원	농식품분야 우수 기술을 실용·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법인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무기질(화학) 비료 생산업체
스마트팜 지원사업	원예, 축산분야 농업(법)인으로서 교육, 경력, 사업타당성 조건을 갖춘 자 (청년농의 경우, 만40세 미만 농고·농대 졸업자 또는 스마트팜 교육 이수자)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지원대상자는 수출 확대, 생산·가공의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자와 농산물가공사업자이며 최근 결산일 기준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 기업신용평가결과에 의한 신용평가 결과 채무자의 차주등급이 5C 이상인 자임.

- 수출 및 규모화 지원 대상 농산물가공업자는 농산물가공사업지원 자금의 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을 가진 경영체임.

2.1.3. 지원 조건

○ 농업종합자금의 금리는 지원 대상에 따라 2.0~3.0%의 수준에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됨.

- 원예·축산·가공산업의 시설·개보수 자금은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운전자금은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함.
- 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의 경우 시설자금은 1.0% 고정금리, 운전자금은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함.
- 수출 및 규모화 자금은 고정 이차방식을 적용하며 사업자별 여신금리에서 지원금액 10억 원 미만은 2.8%, 10~30억 원은 2.3%, 30억 원 이상은 1.3%의 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함.[1]

○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은 13~15년, 개보수자금은 5~10년, 운전자금은 2~3년, 농기계자금은 5~8년임.

- 시설자금은 3~5년 거치 후 10년 상환, 개보수자금은 2~3년 거치 후 3~7년 상환, 운전자금은 2~3년 이내 상환, 농기계구입자금은 1년 거치 4~7년 상환임.

---

1 고정금리: 시중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리로 지원하는 것
변동금리: 일정한 이율을 이차보전 하여주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받는 금리는 여건에 따라 변동함.

〈표 2-5〉 세부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

세부사업	금리	대출기간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시설·개보수)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1.0% 고정금리 (운전)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단,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1.5% 고정 또는 변동금리 (수출 및 규모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 1.3~2.8% 차감한 금리	(시설)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전) 2년 이내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시설)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전) 2년 이내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시설·개보수)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전)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농기계수리·장비지원) 3.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시설)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운전) 1년 이내,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2년 이내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시설·개보수)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전)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시설)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전) 2년 이내
우수기술사업화지원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3.0% 고정 또는 변동금리	1년 이내

○ 각 사업별/자금별 지원한도는 총 사업비의 80~90%(시설·개보수 자금), 1회전 운전자금(운전자금), 농업기계목록집 상의 대출한도액 이내(농기계 자금)임.

- 농산물 가공사업과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동일인당 50억 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은 동일인당 42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함.
- 2018년에 새롭게 농업종합자금에 편입된 청년 스마트팜 자금은 동일인당 30억 원 한도로 지원됨.

〈표 2-6〉 세부사업별 지원 한도

세부사업	지원 한도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농산물 가공사업) 동일인당 50억 원 (수출 및 규모화사업) 동일인당 42억 원 (스마트팜지원사업) 총 사업비의 90% 이내 동일인당 50억 원 한도, 청년농업인 10억 원 이하 100% 30억 원 한도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총 사업비의 80% 이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사업자당 15억원이내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기계 구입, 신제품) 융자지원 한도내에서 실판매액 (농기계생산) 연간 2,000억 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총 사업비의 90% 이내
꿀·녹용가공산업육성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록협회가 통보한 업체별 한도 적용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쌀 가공업체) 50억 원 (정부양곡도정·보관업체) 15억 원
우수기술사업화지원	10억 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한국비료협회에서 통보한 한도 적용

2.1.4. 예산구조

○ 농업종합자금의 이차보전 소요 예산은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이차율에 대출평잔을 곱한 금액이 되며, 2018년 예산 산출내역은 <표 2-7>에 제시되었음.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2.99%, 3.14%이며 대출금리는 1.00~3.00%임.
- 고정이자로 대출되는 자금의 이차율은 0.64~1.99%이며 변동이자로 대출된 자금의 이차율은 1.00%와 2.00%로 고정되어 있음.

〈표 2-7〉 2018년 종합자금 이차보전 소요 예산 산출내역

구 분	금 리 (%)			2018년 소요액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부채대책 등	3.14	1.50	1.64	847	14
농기계자금	3.14	2.00	1.14	2,144,885	24,452
시설자금	3.14	2.00	1.14	989,205	11,277
운전자금(고정)	3.14	2.50	0.64	890,916	5,702

(계속)

구 분	금 리 (%)			2018년 소요액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운전자금(변동)	-	변동	2.00	1,766,506	35,330
농기계생산(시설)	3.14	2.00	1.14	74,769	852
농기계보관창고(시설)	3.14	2.00	1.14	990	11
쌀가공육성(변동)	-	변동	2.00	5,534	110
농식품우수기술화(변동)	-	변동	2.00	101,858	2,037
농기계수리부품(변동)	-	변동	1.00	24,099	241
농기계수리부품(시설)	3.14	3.00	0.14	10,573	15
스마트팜(시설)	3.14	1.00	1.14	27,437	313
스마트팜(운전고정)	3.14	1.50	0.64	6,859	44
첨단온실신축	2.99	1.00	1.99	135,995	2,706
첨단온실신축	2.99	1.50	0.99	8,989	89
합 계				6,189,462	83,193

자료: 농식품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사업 설명자료』

2.1.5. 지원 절차

○ 지원절차는 대출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신청하면 대출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대출 여부와 규모를 확정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며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함.

○ 대출신청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대출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음.

〈그림 2-1〉 대출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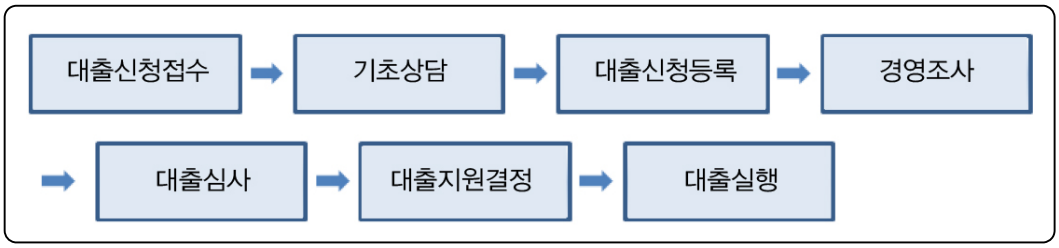

○ 자금 신청자로부터 대출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면 담당자에 의해 기초상담이 이루어짐.

- 자금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을 신청함.

〈표 2-8〉 농업종합자금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개인	ㅁ 주민등록등본 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ㅁ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법인	ㅁ 법인등기부등본 ㅁ 법인인감증명서 ㅁ 정관 또는 규약	ㅁ 조합원명부 ㅁ 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법인 공통	ㅁ 농업경영체 증명(등록확인)서 ㅁ 사업계획서 ㅁ 농지원부 ㅁ 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ㅁ 축산업등록증(4대축종인 경우) ㅁ 인삼경작확인서(인삼식재자금) ㅁ 거래확인서 ㅁ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검토의뢰서	ㅁ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필요시) ㅁ 재무제표(필요시) ㅁ 최근월말 합계잔액시산표 ㅁ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업장) ㅁ 토지·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ㅁ [대출상담 기초설문]상 근거자료 제출서류(필요시) ㅁ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관련 확인서(필요시)

○ 기초상담은 지원자격심사, 비재무심사, 여신취급제한 여부 확인으로 구성됨.

- 지원자격심사는 신청자가 농업종합자금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비재무심사는 대출상담기초설문 양식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품목, 경영주자질평가, 경영주관리능력평가, 기술수준 평가를 실시함.
- 여신취급제한 여부 확인은 연체 등의 대출결격사항을 확인하는 것임.

○ 그 다음으로는 신청자에 대한 경영조사가 이루어지며 기초경영조사, 경영체현황, 사업현황, 거래신뢰도, 금융거래현황, 재무현황 파악을 거쳐 종합의견을 내림.

○ 다음 단계는 대출심사이며 담당자는 소요자금과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대출신청인의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심사평가표를 작성, 대출전결건의서를 작성함.
- 담당자는 대출신청인의 신용평점을 바탕으로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하여 대출지원 여부를 결정함.

○ 마지막 대출실행 단계에서는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출결정금액의 30% 이내에서 대출금 선지급이 가능하며 분할 대출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진도에 따라서 분할 대출이 이루어짐.

2.1.6. 기관별 역할 분담 체계

○ 농식품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함.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을 접수하면 행정기관(시·군·구 또는 기술센터)에 사업 계획상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에 대하여 적격 여부 심사를 의뢰함.
- 신청자가 원예시설물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출취급기관은 설계도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함.
- 시설물 완공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이 적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대출이 가능함.

○ 지자체, 기술센터에서는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함.

○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대출적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사업내용과 사업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액을 결정하고 대출을 실행함.

〈그림 2-2〉 기관별 농업종합자금 지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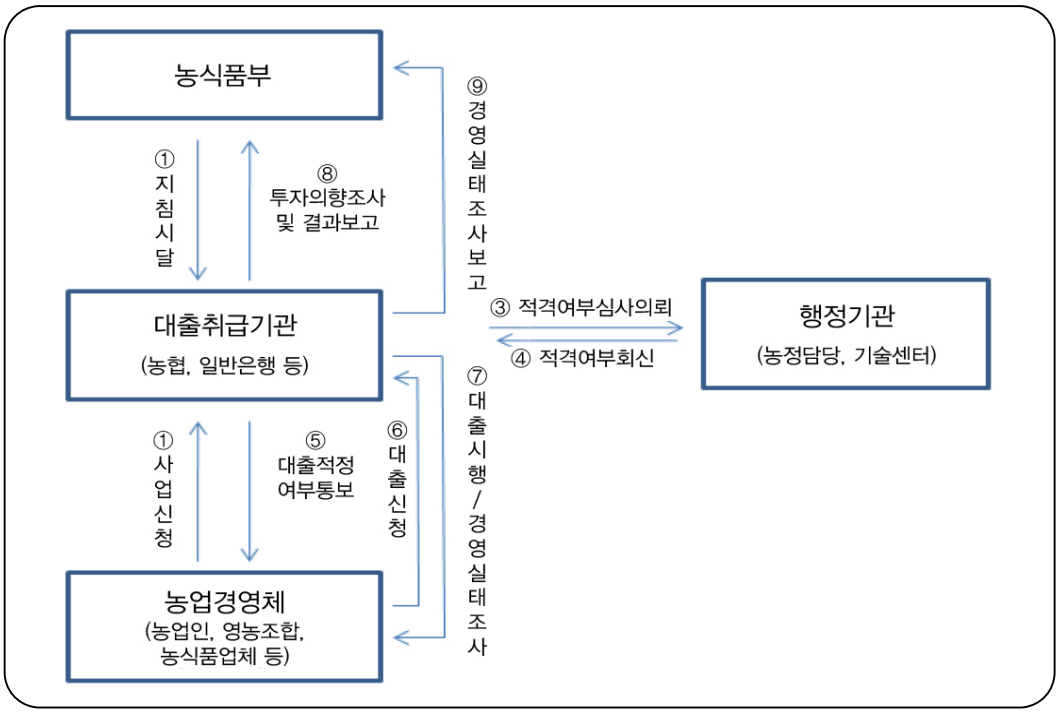

자료: 농식품부. 『2018 사업시행지침서』. 2018

2.1.7. 사후관리

○ 자금 지원 사후, 대출취급기관은 수혜 대상자의 재무상태와 수익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경영상태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함.

- 원예·축산 분야 재배·생산사업자, 농촌민박 사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의 대출잔액이 있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함.
- 스마트팜 지원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실태조사 사후 컨설팅을 포함한 경영 평가를 수행함.

○ 경영실태조사 대상은 해당 분야의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 원 이상인 농업경영체이며 연 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함.

- 운전자금만 대출받은 신청인은 경영실태조사를 생략함.

○ 경영실태조사는 사업현황, 재무현황, 금융거래현황, 거래신뢰도 등을 바탕으로 해당 경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손익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경영실태조사는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후관리 조치로서 대출인의 재무 및 손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경영실태조사 결과 경영상태 불량(적자시현, 재무비율 악화 등)으로 판명되어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컨설팅 지원사업을 안내함.

- 농협은행은 해당 자에 대하여 재무건전성 지도를 하고, 품목동향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농업교육을 안내하는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함.

○ 최근 3년간 경영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영체는 1,988개(2015), 1,542개(2016), 1,226개(2017)임.

〈표 2-9〉 경영실태조사 완료 경영체수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개인	1,911	1,514	1,209
법인	77	28	17
합계	1,988	1,542	1,226

자료: 농협은행. 『농업종합자금 경영실태조사 결과 분석』. 각 연도

○ 조사 결과, 경영실태조사 대상 경영체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상태 “우수” 및 “양호”경영체가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상태가 “불량”이거나 “휴·폐업” 상태인 경영체는 전체 조사대상의 1% 미만임.

- 사업상태 “우수”는 대출심사 당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대비 사업 실적 20% 초과인 사업체, “양호”는 매출액 또는 순이익 대비 ±20%인 사업체, “보통”은 매출액 또는 순이익 대비 사업실적이 60~80%인 경영체, “불량”은 사업실적이 매출액 또는 순이익 대비 60% 미만의 사업체를 의미함.

〈표 2-10〉 경영실태조사 대상자의 사업상태

단위: %

연도	우수	양호	보통	불량	휴·폐업	계
2015	11.4	59.1	28.4	0.8	0.3	100
2016	10.4	57.5	31.5	0.3	0.3	100
2017	13.3	57.3	29	0.4	0	100

자료: 농협은행. 『농업종합자금 경영실태조사 결과 분석』. 각 연도

○ 조사대상 경영체의 평균 자산보유액은 12억 4,196만 원(2017년 기준)이며 부채는 6억 4,296만 원으로 순자산은 6억 1,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1〉 조사대상 경영체 전체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천 원

연도	자산			부채			순자산 (=A-B)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A)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B)	
2015	371,277	965,581	1,336,859	225,322	361,504	586,826	750,033
2016	331,256	1,195,839	1,527,095	183,212	462,403	645,615	881,480
2017	293,588	948,375	1,241,963	148,782	476,184	624,966	616,997

자료: 농협은행. 『농업종합자금 경영실태조사 결과 분석』. 각 연도

○ 조사대상 경영체의 영업이익률은 12.3~16.5% 수준이며 당기 순이익은 6,851~8,07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2〉 조사대상 경영체 전체 손익현황

단위: 천 원, %

연도	매출액 (A)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B/A)		(C/A)			(D/A)			(이자비용)		(F/A)
2015	892,792	754,711	84.5	138,081	15.5	28,594	109,487	12.3	10,163	34,600	(30,882)	68,514	7.7
2016	863,742	735,839	85.1	127,903	14.8	12,687	115,216	13.3	8,038	33,628	(31,227)	72,510	8.3
2017	750,023	613,902	81.8	136,121	18.1	11,716	124,405	16.5	4,840	33,699	(31,456)	80,727	10.7

자료: 농협은행. 『농업종합자금 경영실태조사 결과 분석』. 각 연도

2.2. 지원현황

2.2.1. 예산

○ 농업종합자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최근 이차보전 예산은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감소추세에 있음.

- 농업종합자금 예산은 2013년 1,371억 원에서 2017년에는 752억 원으로 최저점에 도달하였다가 2018년에는 832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2-3〉 농업종합자금 연도별 이차보전 예산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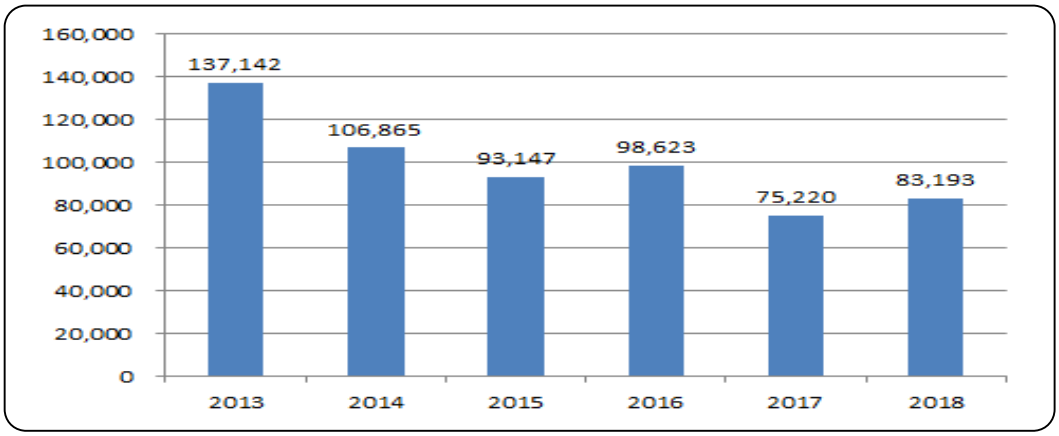

자료: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안 개요』. 각 연도

2.2.2. 신규 및 대출잔액 추이

○ 농업종합자금의 지원금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계획 대비 지원 실적도 높은 수준임.

-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은 2013년에 1조 3,831억 원이었으며 매년 급상승하여 2017년에는 2조 6,895억 원에 이름(연평균 증가율 18.1%).
- 지원율은 추세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간 지원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음.

〈표 2-13〉 농업종합자금 지원 계획 및 실적(신규 대출)

단위: 백만 원

연도	신규대출			잔액	
	계획	실적	지원율	연말 기준 잔액	요보전평잔
2013	2,021,000	1,383,078	68.4%	4,474,029	4,472,077
2014	2,505,000	1,610,863	64.3%	4,591,249	4,501,206
2015	2,562,700	1,845,663	72.0%	4,934,701	4,741,088
2016	2,706,940	2,499,869	92.4%	5,743,763	5,361,772
2017	2,936,940	2,689,502	91.6%	6,398,547	6,113,797

주: 지원율은 계획/실적*100임.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 신규 대출 증가의 결과, 농업종합자금의 대출잔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2013년 4조 4,740억 원이던 연말잔액은 2017년에 6조 3,985억 원으로 43% 상승하였음.

○ 대출잔액을 자금별로 살펴보면, 고정금리 대출잔액의 감소와 변동금리 대출잔액의 증가,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금 잔액의 증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요보전잔액을 기준으로 고정금리 자금의 대출잔액은 2조 6,062억에서 1조 4,503억 원으로 연평균 13.6%씩 감소하였으나 변동금리 자금의 대출잔액은 789억 원에서 1조 1,157억 원으로 연평균 144.8%씩 증가하였음.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자금의 대출잔액은 444억 원에서 1조 1,888억 원으로 연평균 127.5%씩 증가함.

〈표 2-14〉 자금별 평잔액

단위: 백만 원

자금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정금리	4,372,806	4,176,987	3,643,203	3,159,138	2,829,372
변동금리	0	142,671	748,052	1,535,895	2,056,808
우수기술화(고정+변동)	54,915	71,333	65,746	44,598	26,960
수출규모화	44,356	110,214	284,088	622,141	1,195,171
스마트팜(고정+변동)	0	0	0	0	5,486
합계	4,472,077	4,501,206	4,741,088	5,361,772	6,113,797

주: 고정금리는 1.5%, 2.0%, 2.5%, 3.0%, 4.0%로 지원되는 자금을 의미하며 변동금리는 이차율 1.0%와 2.0%로 지원되는 자금을 의미함.
자료: 농협은행 내부자료

○ 수출 및 규모화 자금의 신규 대출 금액은 2013년 234억 원에서 2017년도에는 7,221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용도별로 살펴보면, 시설, 개보수, 운전자금 모두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운전자금의 경우 2013년 172억 원에서 2017년 6,504억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2-15〉 수출 및 규모화 자금 신규 대출 실적

단위: 백만 원

연도	시설	개보수	운전	합계
2013	6,221	0	17,220	23,441
2014	16,284	0	129,630	145,914
2015	17,100	0	199,731	216,831
2016	41,820	2,931	506,576	551,327
2017	66,497	5,247	650,382	722,126
연평균 증감율(%)	80.8	79.0	147.9	135.6

주: 개보수 자금의 연평균 증감율은 2016~2017년 증감율임.
자료: 농협은행 내부자료

○ 특히 2014년에 일반 기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결과 일반법인의 대출잔액이 농업회사법인을 앞지르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과 일반법인의 건당 평균 대출잔액 규모는 비슷하지만 총량 면에서는 일반법인의 대출건수와 금액이 농업회사법인을 앞지르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대출건수는 734건이며 총 금액은 5,969억 원으로서 한 업체당 평균 8억 1,300만원을 대출하였음.
- 일반법인의 대출건수는 1,077건이며 총 금액은 8,705억 원으로서 한 업체당 평균 8억 800만원을 대출하였음.

〈표 2-16〉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잔액 현황(2018년 6월 말)

단위: 건, 백만 원, %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전체		
건수	대출잔액	건당 대출잔액	건수	대출잔액	건당 대출잔액	건수	대출잔액	건당 대출잔액
734	596,852	813	1,077	870,473	808	1,811	1,467,325	810
(40.5)	(40.7)		(59.5)	(59.3)		(100)	(100)	

주: 괄호 안은 비중임.
자료: 농협은행 내부자료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의 전체 대출건수 중 일반법인 대상 대출건수는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59.3%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나타난 자금 수요의 증가는 타 자금에 비해 유리한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과 농신보의 특례보증 허용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 수출 및 규모화 자금의 금리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1.3~2.8%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하는데 이는 경합관계에 있는 농안기금 사업의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임.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에 대해서는 농신보의 특례보증으로 30억 원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함.[2]

2.2.3. 이차보전액 추이

○ 농업종합자금의 이차보전액은 632억 원(2013)에서 1,134억 원(2017)으로 2013년 수준 대비 79% 증가함.

- 이차보전액과 예산액을 비교하면, 2016년까지는 예산액이 이차보전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2017년에는 이차보전액이 예산편성 시 추정치 대비 대출평잔 증가, 변동금리 대출 증가 등에 따른 이차율 증가로 예산액을 초과하게 됨.

○ 금리방식별로 살펴보면, 고정금리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은 감소하는 반면 변동금리로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변동금리로 지원되는 자금의 이차보전율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차보전액 증가는 잔액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판단됨.

- 고정금리 자금의 이차보전액은 잔액 감소와 이차보전율의 하락으로 인해 362억 원(2013)에서 156억 원(2017)으로 감소하였음.
- 변동금리 자금의 이차보전액은 변동금리가 도입된 2014년에 16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220억 원으로 급증함.

○ 한편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농업종합자금의 재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됨.

- 수출 및 규모화 자금의 이차보전액은 2013년 14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419억 원으로 급증함(연평균 127% 증가).

---

2 일반적인 농신보 보증 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임.

〈표 2-17〉 자금별 이차보전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자금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정금리	61,147 (1.40)	45,577 (1.09)	42,643 (1.17)	33,875 (1.07)	31,176 (1.10)
변동금리		2,853 (2.00)	14,960 (2.00)	29,830 (1.94)	39,993 (1.94)
우수기술화(고정+변동)	769 (1.40)	778 (1.09)	480 (0.73)	322 (0.72)	259 (0.96)
수출 및 규모화	1,353 (3.05)	3,696 (3.35)	9,782 (3.44)	21,733 (3.49)	41,911 (3.51)
스마트팜(고정+변동)					61 (1.12)
합계	63,269 (1.18)	52,904 (1.18)	67,865 (1.43)	85,760 (1.60)	113,401 (1.85)

주: 1) 고정금리는 1.5%, 2.0%, 2.5%, 3.0%, 4.0%로 지원되는 자금을 의미하며 변동금리는 이차율 1.0%와 2.0%로 지원되는 자금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이차보전액을 대출잔액으로 나눈 이차보전율임.
자료: 농협은행 내부자료

2.2.4. 분야별 대출 추이

○ 농업종합자금의 신규 대출금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자금이며 축산과 농기계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수출 및 규모화 분야의 지원 규모는 최근 5년간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2013년에는 전체 집행실적의 1.8%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전체 신규대출금의 27.1%를 차지하고 있음.
- 수출 및 규모화와는 달리 농기계와 축산 분야는 전통적으로 자금수요가 많았던 분야로서 농기계의 지원 규모는 전체 신규대출금의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 분야는 20.0%를 차지하고 있음(2017년 기준).

〈그림 2-4〉 분야별 농업종합자금 점유율(신규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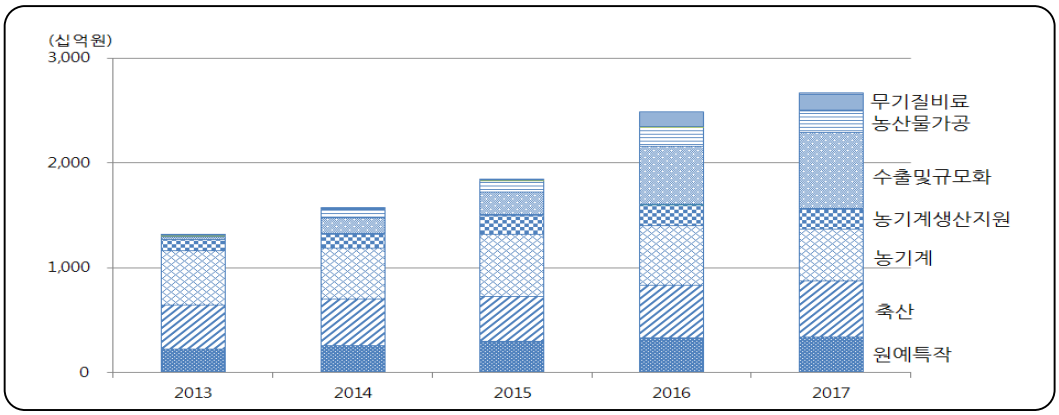

자료: 농협은행 내부자료

○ 용도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운전자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농기계 자금, 시설 자금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운전자금의 비중은 2013년에 56.3%였으며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7년에는 72.4%에 이르고 있음.
- 농기계 자금은 매년 5,000억 원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타 용도의 지원금액이 증가하면서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함.
- 시설 자금은 2016년에 전년 대비 2.5배 증가하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7배 증가하는 등 최근 2년간 빠르게 증가하였음.

〈표 2-18〉 농업종합자금 용도별 지원 실적(신규 대출)

단위: 백만 원, %

연도	시설	개보수	농기계	운전	합계
2013	46,955 (3.6)	3,926 (0.3)	520,093 (39.8)	735,833 (56.3)	1,306,807 (100)
2014	43,829 (2.8)	5,654 (0.4)	489,946 (31.3)	1,026,641 (65.6)	1,566,070 (100)
2015	52,100 (2.8)	6,171 (0.3)	595,126 (32.5)	1,179,298 (64.3)	1,832,695 (100)
2016	129,463 (5.2)	16,360 (0.7)	571,353 (23.0)	1,764,434 (71.1)	2,481,610 (100)
2017	220,753 (8.3)	16,780 (0.6)	499,109 (18.7)	1,930,811 (72.4)	2,667,453 (100)

주: 괄호 안은 비중임.
자료: 농협 내부자료

2.2.5. 개인/법인별 지원 추이

○ 지원자의 특성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인 대출액의 비중이 법인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최근에는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자금의 확대로 법인 대출액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법인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였음.

- 2013년 개인 자금의 비중은 90.4%, 법인 자금의 비중은 9.6%였으나 2017년 개인 자금은 57.7%, 법인은 42.3%로 법인 자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개인은 주로 원예특작과 축산 분야의 생산관련 자금, 농기계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법인은 농기계생산, 수출 및 규모화, 농산물 가공사업지원 자금의 지원 비중이 높음.

〈표 2-19〉 개인/법인의 분야별 농업종합자금 신규 대출

단위: 백만 원

분야별	개인 대출액					법인 대출액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원예특작	216,614	252,955	297,164	330,311	333,323	1,591	35,136	2,446	1,988	2,685
축산	420,268	404,692	404,692	475,982	511,424	7,268	553	20,955	20,469	21,682
농기계	515,119	489,393	594,657	570,207	498,521	474	127,539	469	1,146	588
농기계생산지원	10,473	3,288	16,873	19,419	27,799	93,318	2,030	160,896	175,623	162,488
농기계사후관리지원	3,939	4,580	2,190	3,683	4,818	625	135,032	3,030	6,214	4,395
수출및규모화	9,715	10,882	26,528	71,562	118,160	13,726	74,525	190,303	479,765	603,965
농산물가공	2,173	11,212	12,512	22,453	30,686	3,706	250	92,912	155,615	175,163
고품질우량종자	100	207	0	0	0	926	4,250	622	350	1,076
꿀녹용가공	670	1,700	750	2,207	220	4,007	325	4,307	4,700	4,587
관광농원·농촌민박·농촌체험휴양마을	2,090	2,562	1,369	1,918	2,253	0	0	0	1,137	1,679
무기질비료	0	0	0	0	0	0	0	0	136,860	144,100
스마트팜	0	0	0	0	11,121	0	0	0	0	6,720
기타	0	0	20	0	0	5	0	0	0	0
합계	1,181,161	1,181,471	1,356,755	1,497,742	1,538,325	125,646	384,599	475,940	983,867	1,129,128

자료: 농협은행 내부자료

3. 농업종합자금 평가

3.1. 사업구조

○ 농업종합자금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정책자금을 하나의 자금으로 통합하여 자금 이용자의 실제 수요에 맞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음.

○ 농업종합자금은 여러 자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조건(금리 및 한도), 대출심사방식,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세부사업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 세부사업의 시행지침의 관리,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각기 다른 사업주체가 관여하는 사례가 있음.

- 농기계 관련 자금 중 농기계생산사업,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대출기관에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한국양봉협회와 한국양록협회에서 대출기관에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업체임.
-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임.

○ 위의 사업들은 생산자 단체 또는 정부가 지원대상과 함께 지원 한도도 통보하고 있어 대출기관의 자율성이 완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생산자 단체나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은 대출기관이 대출 심사 적격성을 검토할 때 활용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만 대출 신청 사전단계에서 대출기관 이외의 주체가 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조건에서 금융기관 외의 타 기관이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선별기능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농업종합자금 내 세부사업별로 심사방식이 일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3]

- 농업종합자금 방식을 따르고 있는 사업은 원예·축산 생산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농촌민박, 농기계 구입자금,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농협은행 여신・투자금융업무 방법을 따르고 있음(표 2-20).
- 종합자금심사방식에서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경영조사가 이루어지며 재무평가 뿐만 아니라 비재무평가를 실시하여 두 평가의 결과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결정됨.

- 비재무평가는 신청인이 제출한 대출상담 기초설문에 근거하여 분야별 산업위험, 경영주 자질, 경영관리수준, 기술수준에 관하여 평가하여 평점을 내는 것을 말함.
- 재무평가는 재무제표 또는 기초경영조사표를 근거로 부채비율, 매출액대비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고정장기적합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함.

---

3 농업종합자금 심사방식은 주로 재무제표등 회계기록이 없거나 미흡한 농업인들을 위한 대출심사 모형으로 농작물과 축종별 소득금액을 조사하고 그 소득자료를 토대로 운전자금 산출 및 상환능력을 판단하여 심사함.

〈표 2-20〉 자금별 대출심사 방식

세부사업	분야	대출심사방식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원예·축산 생산	농업종합자금 심사방식
	농산물가공사업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준용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준용
	천적 및 곤충사업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준용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준용
	스마트팜지원사업	농업종합자금 심사방식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준용
	관광농원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준용
	농촌민박	농업종합자금 심사방식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기계 구입	농업종합자금 심사방식
	농기계 보관창고	농업종합자금 심사방식 단, 사후봉사업소,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의 농기계보관창고는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준용
	농기계 생산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준용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준용
꿀·녹용가공산업육성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준용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준용

○ 그 결과 외견상의 통합은 이루었으나 실제 사업운영 방식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의도한 수준의 통합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각 세부사업들은 사업부서와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이나 지원사업의 성격이 상이하여 융자 관련 업무체계가 일원화되기 어려운 구조임.

3.2. 지원 범위

○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대상은 개인 농가부터 농식품 기업, 농기계 생산 업체, 종자업체, 비료 생산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함(그림 2-5).
- 각 지원 대상은 농업종합자금 내 세부사업과 연계되어 있음.

- 농업종합자금이 도입되었던 1999년에는 원예 및 축산 농가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타 자금이 통합되면서 농업법인 외의 일반경영체가 종합자금의 지원 범위내로 편입됨.

〈그림 2-5〉 농업종합자금 지원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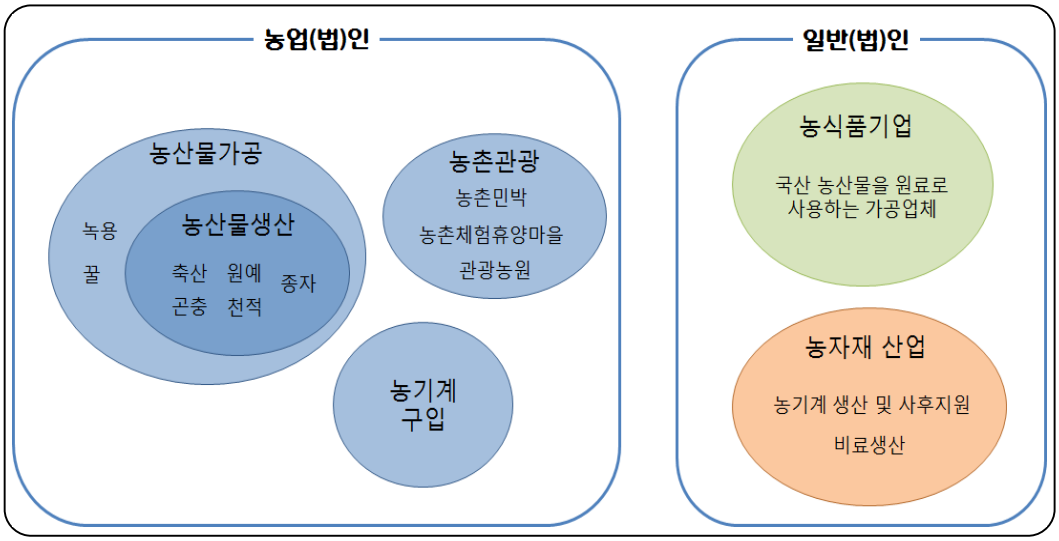

○ 특히 농산물가공사업과 수출 및 규모화 자금은 농업(법)인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일반법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범위가 일반기업에까지 확장되고 그에 따라 자금소요 규모가 급증하면서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일반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농업정책금융 체계 내 타 지원 수단-농식품모태펀드와 농신보-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 제2조에서는 농림수산식품산업을 (1)농업, (2)어업, (3)식품산업, 그리고 (4)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으로 정의함.
- 이러한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동법 제3조에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투자 대상(경영체)를 앞서 정의한 농림수산식품 산업에 종사하거나, 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42호에는 보다 세분된 투자대상이 명시되어 있음.

○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투자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 농림수산식품 관련 연구개발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표 2-21〉 관련 법령 상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

관련 법령	투자 대상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양식하는 산업
	식품산업	식품을 생산/가공/조리/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사업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비료·사료·동물 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 유통·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및 조경업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수산업 관련 산업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산업, 수산용 약품 제조업, 수산용 사료·기자재 제조업, 어선 건조·수리업, 양식장 설계·건설업, 수산 바이오 및 종자산업, 해양심층수 산업 및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식품산업 관련 산업	식품포장용기 제조업 및 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음식료품 도소매업 등 식품산업 관련 서비스업
	농림수산식품 소재업	농약, 비료, 양액(養液), 사료, 동물약품, 포대, 필름 또는 포장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생산하는 산업
	농림수산식품 생산 설비업	농림수산식품 및 농림수산식품 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기계 또는 공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생산하는 산업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소금생산업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유통 산업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42호	농업 관련 산업	농산물 유통·가공업, 농업바이오,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농촌관광, 수목조사업, 농업시설임대 및 매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수산업 관련 산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수산바이오, 해양심층수산업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및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원양산업자	
	농림수산식품 관련 연구개발업	

자료: 조승철 외(2018)

○ 농식품모태펀의 투자대상은 해당 경영체가 농업법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됨.
- 따라서 일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농림수산식품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투자 대상이 됨.

○ 농신보의 보증 대상은 농신보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업자로 통칭됨.
- 농림수산업자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있음.

○ 농식품모태펀드와 농신보의 보증 대상은 전통적인 농업 생산 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까지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됨.

○ 이러한 정책방향과 타 지원 수단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대상으로서 일반 식품기업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3.3. 자금 지원 효율성

○ 자금 지원의 효율성 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시장수요 반영 여부임.
- 농업종합자금 도입 이전에는 정책자금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채 특정 분야에 과잉투자가 이루어졌음.
-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농업종합자금은 시장 동향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도입되었음.

- 정책자금이 행정기관의 정책적 논리에 의해 배분되지 않고 시장성이 높은 곳에 투자됨으로써 자금 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두 번째는 지원 경영체의 부실화 여부임.
- 사업성이 높은 경영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부실화율을 낮추는 것이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업종합자금의 생산 부문에서 각 분야의 최근 5년간의 시장규모와 소비동향을 살펴보고 해당 분야에 대한 대출 추이와 비교함으로써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 품목별 생산액 비중이 증가하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출 지원이 증가하는 것은 자금 지원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분야별 성장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품목별 생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채소, 화훼, 인삼, 쌀의 생산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하락 추세에 있으나 축산과 특작 분야의 생산액은 증가함(그림 2-6).

○ 생산액이 감소한 네 분야 중 쌀은 판매가격의 하락과 생산량(소비량)의 감소로 인하여 시장 규모의 축소가 뚜렷하게 나타남.
- 쌀의 경우 1인 당 연간 소비량이 2012년 69.8kg에서 2016년 61.9kg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농가판매가격지수(2015=100)는 105.8에서 89.6으로 하락하였음.

○ 인삼과 채소의 경우 농가판매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나 생산량(또는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액의 감소가 나타남.
- 채소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2년 159.1kg에서 2016년 144.3kg으로 감소하였음.

〈그림 2-6〉 농작물 유형별 생산액과 대출실행금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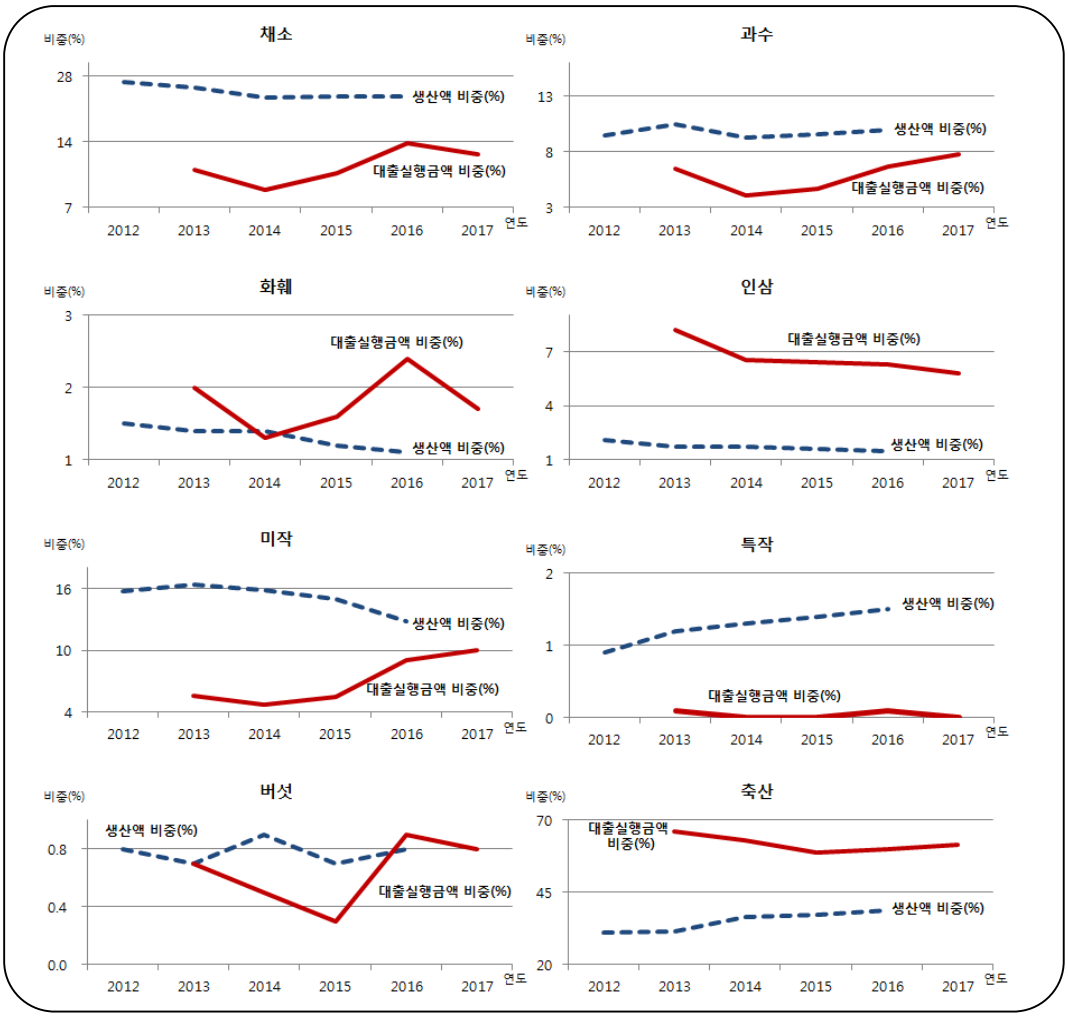

주: 생산액 비중은 농림업 생산액 대비 비중임.
자료: 농식품부, 『농림업생산지수』. 각 연도
농협은행 내부자료

○ 화훼부문에서는 생산액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화훼의 소비 감소 추세와 수입산 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1인당 화훼 소비액은 14835원에서 11722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화훼 수입량은 4만 7,852톤에서 6만 2,971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대출 규모가 시장수요의 변화와는 반대 방향의 추세를 보이는 품목이 일부 있으나 시장수요의 변화 추이와 대출 비중이 동일한 추세를 보이는 품목도 있음.
- 쌀, 축산, 채소, 특작 부문의 대출 비중과 생산액 비중은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과수, 화훼, 인삼, 버섯 등은 대출실행 비중과 생산액 비중이 유사한 추세로 변동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농업종합자금은 수요자 중심의 자금배분과 엄격한 대출심사로 인하여 다른 대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연체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 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됨.
- 농업종합자금의 연체율은 최근 5년간 감소하여 0.44%에서 0.21%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농협에서 융자한 자금의 전체 연체율보다 낮은 수준임.
- 농·축협 전체 대출의 연체율은 1.01~3.02%이며 농협은행 전체 대출의 연체율은 0.47~1.02%임

〈표 2-22〉 자금별 연체율

단위: %

자금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종합자금 전체	0.44	0.34	0.20	0.17	0.21
원예특작		0.38	0.24	0.23	0.38
축산		0.33	0.24	0.2	0.14
농기계구입		0.27	0.21	0.17	0.18
수출 및 규모화		0		0.02	0.18
농산물가공			0.05	0.38	0.42
농·축협 대출 전체	3.02	2.37	1.44	1.05	1.01
농협은행 대출 전체	1.02	0.77	0.71	0.59	0.47

자료: 농협은행 내부자료

3.4. 타 자금과의 중복성

□ 농안기금 사업

○ 농업종합자금과 같이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농업종합자금과 경합관계에 있는 자금사업 중 하나는 농안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사업임.

- 특히 농안기금 융자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농식품 기업이어서 농업종합자금의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또는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지원 자금과 경합 가능성이 높음.

〈표 2-23〉 농안기금 융자사업 대출조건

구분	자금명	지원대상	지원용도	고정 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수출	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자금(운영)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원료 및 부자재 구입 등 필요자금	2.5~3	1년	200억원 (중견기업은 150억원)
	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자금(시설)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업체 시설 현대화 자금	2~3	10년	20억원
식품 외식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농식품 가공업자	국내산 원료 농산물 매입 및 원료의 저장·가공·운송비	2.5~3	1년 (전통주류 2년)	30억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자금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2.5~3	시설: 5년 운영: 2년	40억원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농식품 제조업체 등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 및 소규모 식품제조 창업 시설자금, 소규모식품제조 시설자금 지원업체에 한해 운영자금 지원	2~3	시설:10년 운영:2년	시설: 50억원 운영: 2억원
	외식업체육성자금	외식업체	외식업체 시설 및 운영자금	2.5~3	시설: 5년 운영: 1년	시설: 1억원 운영: 5억원

주: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외식업체육성자금은 변동금리로도 운영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contents/apko331100/view.action) 2018.07.10.

○ 그러나 이들 자금의 대출조건은 종합자금에 비해 다소 불리함.

- 농안기금의 융자사업 대출금리는 농업경영체가 아닌 일반 업체의 경우 농업종합자금보다 높은 3.0%임.
- 대출기간은 10년으로 농업종합자금에 비해 짧음.

- 또한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의 경우 대출한도가 농업종합자금(한도 42억 원)보다 적은 20억 원임.

○ 농안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 사업은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농산물가공산업 지원과 지원대상이 중복되지만 대출조건의 불리성으로 인하여 농업종합자금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됨.

□ FTA 기금 사업

○ 한편 FTA 기금 사업은 과수, 원예, 축산 분야의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조금과 융자를 함께 지원하고 있어 농업종합자금의 해당 분야 자금 수요를 감소시킴.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국비20%, 지방비30%, 융자 30%, 자부담 20%
-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국비20%, 지방비30%, 융자 30%, 자부담 20%
- 원예시설현대화: 국비20%, 지방비30%, 융자 30%, 자부담 20%
- 축사시설현대화: 보조 0~20%, 융자 30~80%, 자부담 20%

○ FTA 기금 사업은 국비 또는 지방비를 함께 보조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음.
- 금융기관은 융자금에 대해 채권보전만 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신용부족 시 융자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보조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음.

○ FTA 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 사업은 원예·특작·축산부문의 생산 분야에 있어서 시설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자금 용도가 중복되며 보조금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도가 높음.
- 융자자금 대출이자는 농업종합자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출기간 면에서는 FTA 기금 사업이 다소 불리함.

○ 요약하면, 농안기금과 FTA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융자 사업들은 지원 대상과 자금의 용도 면에서 농업종합자금과의 중복성이 있으나, 세부적인 지원 조건이나 지원방식이 조금씩 달라 자금 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식품 경영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타 자금과 비교했을 때 농업종합자금의 지원조건이 유리하여 식품 경영체가 농업종합자금을 선호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표 2-24〉 FTA기금 융자사업 대출조건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용도	고정금리 (%)	대출기간	대출한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수산업 발전계획참여 조직 회원 중 사업시행 주체의 유통사업 참여 경영체	과실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3.0	3년 거치 7년 상환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스마트팜의 환경관리, 생장관리에 필요한 시설	2.0	3년 거치 7년 상환	6천만원
원예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현대화	채소·화훼류 생산 농업경영체	온실·육묘장 시설현대화 화훼분야 생산시설·설비	2.0	3년 거치 7년 상환	21억 원
	ICT융복합확산	채소·화훼류 생산 농업경영체	스마트팜의 환경관리, 생장관리에 필요한 시설	2.0	3년 거치 7년 상환	6천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경영체	축산 시설 신축·개보수	1.0~2.0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 156~3,712백만원 (이차보전) 560~9,600백만원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	축산경영체	스마트팜의 환경관리, 생장관리에 필요한 시설	2.0	3년 거치 7년 상환	5억 원

주: 대출한도는 최대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융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contents/apko331100/view.action) 2018.07.10.

□ 기타 사업(기금)과 경합

○ 농안기금과 FTA 기금 사업 외 농업종합자금과 자금 용도가 같은 자금으로는 농축산경영자금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농어업경영자금이 해당됨.

○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은 운전자금의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연리 지원한도가 낮은 소규모 자금임.
- 농축산경영자금은 1,000만 원, 경기도 농어업경영자금은 6,000만원이 한도임.

○ 해당 자금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농업종합자금과 중복성이 있을 수 있으나 지원규모가 작아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어 농업종합자금의 지원대상과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5. 지원조건(금리)

○ 저성장 기조 속에서 국내 금리는 하락 추세에 있다가 최근 1년 사이에 상승 기조로 전환되었음.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1년 6월 10일에 3.25%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6년 6월 9일에 1.25%에 이름.
- 이후 기준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압박으로 인해 상승 추세로 돌아서서 2017년 11월 30일자로 1.5%가 됨.
-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는 2010년 초에 4.11%였으나 꾸준히 하락하여 2017년 6, 7월 경에는 1.58%에 이르렀다가 반등하였음.

○ 미국은 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금리의 상승 압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그림 2-7〉 금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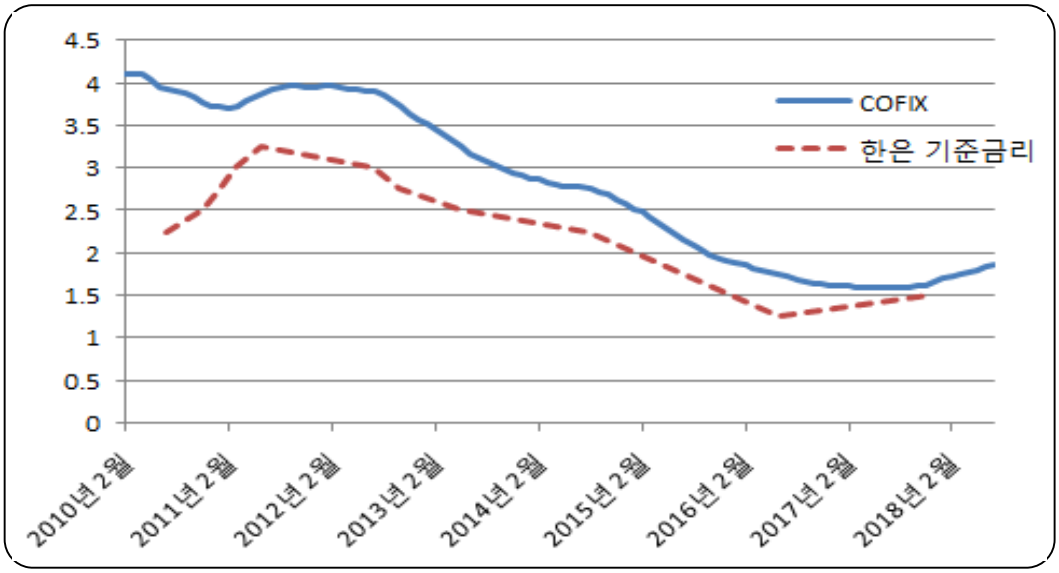

주: COFIX는 잔액기준임.
자료: 한국은행(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43)
은행연합회(http://www.kfb.or.kr/info/cofix.html?S=GB&BasicYear=2011&BasicYear=2010&x=10&y=17)

○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기준금리와 정책금리는 시장 금리의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5년간 하락하였음.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2014년 4.09%였으나 2017년에는 3.16%로 하락하였고 2018년 예산편성 기준금리는 3.14%임.
- 운전자금은 3.0%에서 2.5%로, 시설자금은 2.5%에서 각각 2.0%로 2015년 8월과 2016년 1월에 한 차례씩 인하되어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앞으로 시장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이차보전액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시장금리 변동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시장금리에 따라 이차보전 금리도 동반 상승할 것이므로 고정금리 대출 방식의 이차보전액은 증가할 수 있음.

○ 한편 현재의 농업종합자금 금리는 농업경영체가 이용가능한 타 자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경영체에 있어서는 유리한 수준임.

○ 따라서 일반 농식품 기업에 대해서는 타 융자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하여 농업종합자금으로 자금 수요가 쏠리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3.6. 지도금융의 역할

○ 종합자금의 지도금융기능은 사전 경영조사와 사후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사전 경영조사는 농가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와 적정 투자규모 산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후 경영조사는 조달된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부실방지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의미가 있음.

○ 사전 경영조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출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경영조사를 생략함.
- 농촌민박 신규사업자
- 농업종합자금 심사방식을 배제하고 농협은행 여신·투자금융업무 방법의 대출심사 방식을 준용하는 사업
- 대출금액 1,000만 원 미만 농기계 구입자금

○ 사전 경영조사를 이행한 경영체 중 1억 원 이상의 대출 잔액이 있는 신청인은 경영실태조사 대상이 됨.

○ 경영실태조사는 해당 경영체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원래 자금 지원 경영체의 부실방지를 위한 장치임.

- 사업성이 없는 대출자에게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막고 자금 지원과 함께 효과적인 자금 활용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 현재의 농업종합자금의 연체율은 타 자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영실태조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경영실태조사를 비롯한 대출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종합자금의 지도금융기능은 상환가능성이 높은 경영체에 자금이 지원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의 도입 취지를 일부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의 경영실태조사는 한계도 동시에 안고 있음.

○ 우선 경영실태조사가 1억 원 미만의 대출자와 운전자금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대출잔액 1억 원 미만의 대출자가 경영실태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경영실태조사의 행정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시 신청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실태조사를 생략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경영실태조사 결과는 축적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만 관리되고 있고 각 연도의 조사가 전년 조사 결과와 연결되지 않고 별개의 조사처럼 이루어지고 있어 동일한 업체의 사업성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음.
- 경영실태조사의 결과를 외부인이 확인할 수 없어 심층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 동일한 업체가 매년 경영실태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자료를 이용한 동태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의 조사결과는 단년도 분석에 그치고 있음.

○ 경영실태조사는 동일한 업체의 반복적인 수혜 여부 판단,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성과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해당 자료가 DB화 되지 않고 일회성 보고에 그치고 있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3.7. 자금 수요

○ 최근 5년간의 자금 지원 추이를 보면 고정금리로 대출된 자금은 감소하는 반면 변동금리로 대출된 자금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변동금리 대출자금의 증가는 변동금리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른 운전자금의 지원 규모 증가 및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사업자 수의 증가에 기인함.

○ 변동금리로 대출된 자금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금리부담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리 변동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대출경영체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신규 대출실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 및 규모화 사업의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및 규모화 자금의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수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자금의 이차보전율은 3%가 넘는 수준으로서 타 자금에 비해 매우 높아 이차보전 예산의 증가 요인이 됨.
- 일반 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자금 지원의 현실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 한도관리, 이율 조정, 지원 대상 재검토, 사후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4]

○ 한편 채무자별 운전자금 지원 횟수를 살펴보면 운전자금이 중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 신청자의 66.1%가 운전자금을 2회 이상 지원 받았으며 10회 이상 지원받은 신청인도 4.9%에 달하고 있음.
- 법인은 52%가 운전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았으며 10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도 1.2%를 차지하고 있음.

○ 특정 경영체에 자금 지원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원 대상의 선순환과 지원이 절실한 타 경영체의 진입을 막기 때문에 자금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표 2-25〉 채무자별 운전자금 지원 횟수

단위: 명, 개, %

지원 횟수	개인		법인	
	신청자수	비중	신청업체수	비중
1회	31,968	33.9	924	48.0
2회	20,274	21.5	471	24.5
3회	11,734	12.4	235	12.2
4회	8,330	8.8	134	7.0
5회	5,564	5.9	62	3.2
6회	4,382	4.6	31	1.6
7회	3,203	3.4	18	0.9
8회	2,466	2.6	17	0.9
9회	1,811	1.9	10	0.5
10회 이상	4,590	4.9	23	1.2
계	94,322	100.0	1,925	100.0

자료: 농협은행 내부자료

4 수산분야 영어자금의 경우 고액대출자에 대해서 금리를 차등적용하고 의무 상환율을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음.

3.8. 자금 이용의 편의성

○ 대출신청인의 입장에서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원예, 특작, 축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99농가의 응답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종합자금의 인지도, 수혜현황, 신청절차 상의 애로사항, 대출심사 관련 만족도를 평가하였음.

○ 농업종합자금의 인지도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많은 가구가 농업종합자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알고 있다고 응답한 농가는 전체 응답농가 중 62%였으며 잘 모른다고 응답한 농가는 38%임.

○ 인지도에 이어 실제 신청경험 유무를 설문한 결과 신청경험이 있는 농가는 응답농가의 절반 이하로 종합자금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농가의 비중이 낮았음.
- 농업종합자금을 알고 있는 농가 중 신청농가는 38%, 미신청농가는 62%임.

○ 신청 경험이 있는 농가가 받은 농업종합자금의 주요한 용도는 운영자금과 농기계 구입자금이며 시설 및 개보수 자금은 다소 비중이 낮았음.

○ 설문조사 결과는 농업종합자금 도입 20년차인 현재에도 자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농가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금에 대해서 미인지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농가가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농업종합자금 미신청 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문한 결과, 정책자금이 불필요한 농가(응답농가의 41.7%) 이외에는 농업종합자금에 대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응답농가의 27.0%)이 가장 많았음.

○ 농업종합자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설문한 결과 신청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힘.
- 또한 농업종합자금의 개선 필요 사항으로 서류의 간소화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대출금리 인하가 그 뒤를 이었음.

○ 신청 서류 중에서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항목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서류들은 자금 지원대상을 구분하거나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용도로 쓰여지고 있음.
- 또한 신청자가 서류의 용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필수가 아닌 서류라도 제출하는 것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 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한 시점부터 대출실행까지 걸린 기간을 설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2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사업자가 대출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서류를 보완하고, 농신보나 시설지원적격여부 회신 등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 기간임.
- 과거 농업종합자금 도입 이전에는 정책자금의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자금 지원의 적기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음.

4. 농업종합자금 개선방안

4.1. 농업종합자금 목표와 위치 설정

4.1.1. 산업금융으로서의 농업종합자금

○ 농업종합자금은 산업육성의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금융의 선별기능을 활용하여 농업발전을 촉진하도록 함.

- 특정 정책목적보다는 산업육성,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이 목적이라는 의미에서 농업종합자금은 타 농업정책자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과거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금융기관은 단순히 채권보전만 하는 것에서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도록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신용평가에 따라서 지원되도록 전환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가에 지원되도록 함.
- 지원자금의 규모 및 자금사용처를 정부의 사업지침에 의해 먼저 설정하기 보다는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사업계획 설계한 것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여 자금 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사업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함.
- 농업경영체의 자금 수요니즈에 맞게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여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행정기관 지원 시 1.5년이 소요) 농업경영체의 자율적 선택을 중시한 지원체계의 구축으로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고자 함.

○ 농업종합자금은 자금지원 후 경영성과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경영컨설팅과 연계되어 지원하는 선도금융의 기능을 수행함.

- 단순히 농업경영체 자금지원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자금지원 후 경영진단으로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영개선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함.

- 이를 통해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질 위주의 지도금융기능 강화하는 농업금융혁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됨.

○ 농업종합자금이 산업금융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업지침 기준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자금 수요자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의 신용위험을 더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표 2-26〉 농업종합자금의 특징

구분	타 농업정책금융자금	농업종합자금
지원방식	특정목적, 품목별 개별지원	농업경영체 단위 통합 지원
대상자 선정	시장, 군수(행정기관)	금융기관(농협, 회원조합)
지원시기	연 1회 신청 (신청에서 지원 : 약1년 6개월 소요)	연중 수시신청, 수시지원 (지원 효율성 제고)
지원내용	① 1회성 시설자금 위주 지원 ② 지원 자금규모 한정 ③ 채권사후관리-금융기관 사업사후관리-행정기관	① 시설투자, 개보수, 운영자금 등 모든자금을 종합지원 ② 수요자 중심의 자금규모 설정 ③ 사후 경영성과 평가
사업설계	정부지침에 의한 표준설계 의무 적용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설계

4.1.2. 농업정책자금에서 농업종합자금의 위치

○ 농업종합자금이 지원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대상은 규모가 적은 영세소농보다는 농업을 중추적으로 담당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규모화하는 전업농일 것임.

- 농업경영체가 창업, 승계 이후 어느 정도 사업기반이 안정될 경우, 농업경영체의 사업성 평가가 가능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투자확대로 보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성장하고자 하는 주체를 지원하는 정책임.
- 따라서 농업종합자금은 창업 후 성숙단계에 진입하기 직전의 농가의 투자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신규창업농의 경우에는 사업이력이 없고, 사업위험도 높기 때문에 농업종합자금의 사업성평가에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함(그림 2-8 참조).

〈그림 2-8〉 농업종합자금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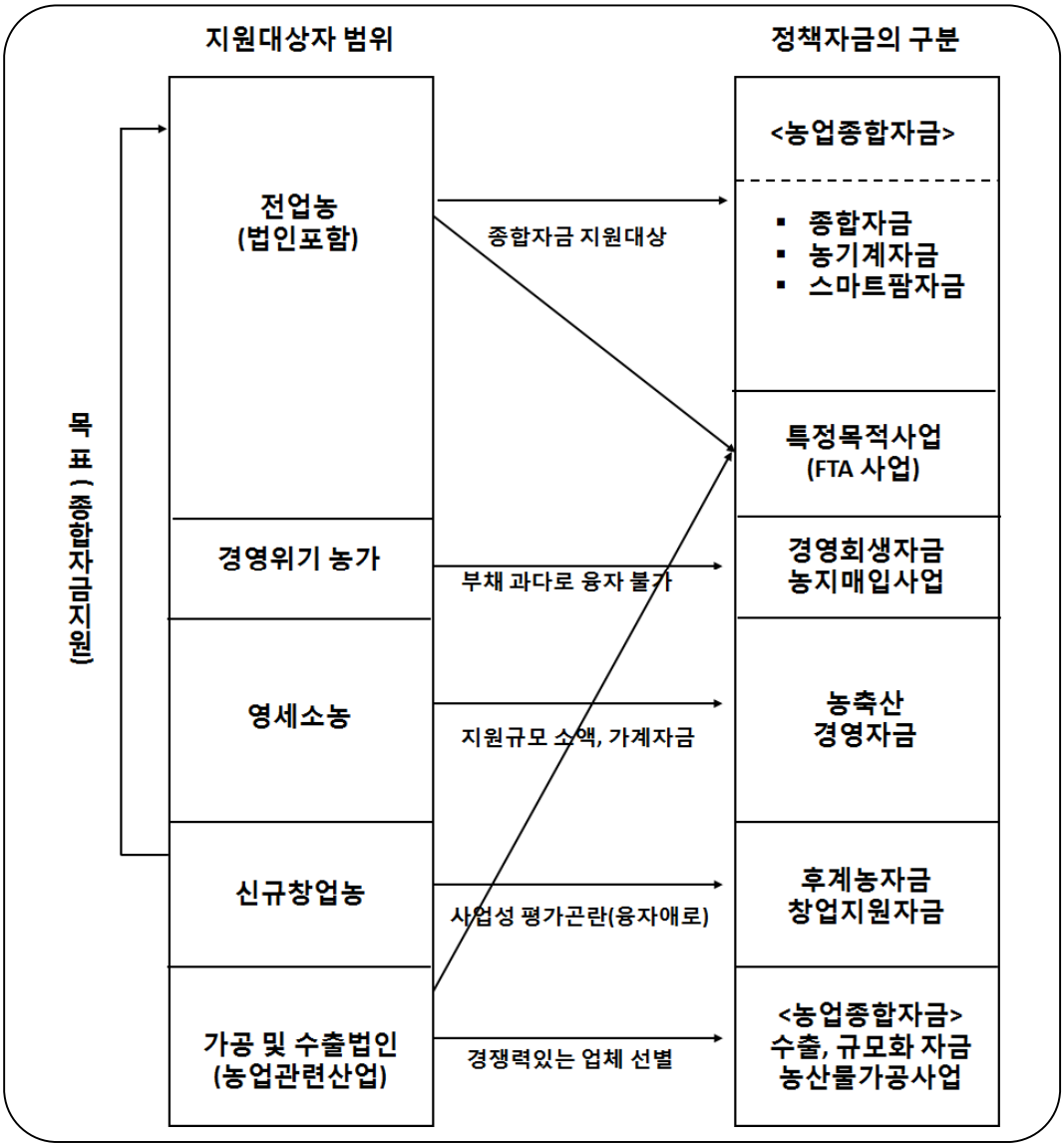

주: 전업농은 중농 이상의 농가를 의미하며, 특정목적 자금은 정책자금으로 행정기관이 선정하는 축산분뇨시설, 사료생산, 주택자금, 학자금 등을 의미함.

○ 신규창업농이 농업부문에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업성과를 나타낼 시점에 농업종합자금이 추가적인 사업 확장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선도농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의 중간 디딤돌 역할을 수행함.

- 농업종합자금 지원으로 선도농가로 성장하였을 경우에는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자금조달에 의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농업종합자금이 고정화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정기간 지원 후에는 정책자금 금리지원보다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함.
- 즉, 농업정책자금 지원을 무한정 계속 지원하기 보다는 정책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책자금 졸업제가 모델이 될 수 있음.[5]

○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는 산업육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업농 및 농업법인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을 지원함.

- 농업종합자금은 사업성 평가에 근거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평가에 의한 사후관리 및 지도금융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영세소농의 접근이 어려움.
- 따라서 농업 의존도가 낮거나 생계형의 영세소농에 대한 자금지원은 별도로 구분된 농축산경영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구분이 필요함.

○ 그러나 자금지원 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업경영체가 경영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자금 등이 여기에 해당됨.

---

5 미국의 정책자금 졸업제는 USDA Farm Service Agency(FSA)가 정부 융자를 받은 수혜자의 경영지표가 개선되면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자세한 내용은 4장의 해외사례 참조.

4.2. 농업종합자금의 개선방안

4.2.1. 사업구조 개편

○ 농업종합자금은 전업농가 및 농업생산법인이 농업생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었으나 최근 농업법인 등은 농업 융·복합화, 유통 및 수출확대 등으로 농업영역을 확대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범위가 생산 분야를 넘어서 가공·유통·수출분야로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짐.

○ 그러나 농업종합자금의 본연의 지원 대상이 생산분야의 경영체인 만큼 농업종합자금의 농산물가공 및 수출지원 등에 대한 지원은 농업생산분야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업체는 농산물가공사업과 수출 및 규모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여 한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수출 및 규모화 자금은 농업 생산 분야와 생산 외 분야(가공, 유통)에 소요되는 자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수출 및 규모화 자금 중 생산 분야 자금은 원예·축산 재배·생산사업으로 통합함.
- 생산 외 분야 자금은 농산물가공사업과 통합하여 농업유통가공종합자금 계정(가칭)으로 관리함.
- 이는 농업생산과 가공·유통 등 농업 외 분야별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또한 기존 수출 및 규모화 자금에 적용되던 고정 이차방식의 이자율은 각각 생산분야의 지원조건으로 변경하여 수출 및 규모화 자금에 수요가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관리함.

○ 현재의 사업구조는 여러 정책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자금구조를 단순화하고 사업운영 방식의 통합 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쌀 가공산업지원사업과 농산물가공사업지원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2.2. 자금지원 효율성 제고

가. 일반 농식품 기업에 대한 지원 관리

○ 농업분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과 농산물 가공·유통·수출 등 타 산업과 융합한 농식품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6차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과 타 산업이 결합된 형태로 경영체가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유통·수출 분야의 경영체를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농산물 가공·유통·수출 분야라고 하더라도 국내 농산물 생산과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는 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농업종합자금의 목적에 맞지 않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농식품 기업에도 농업종합자금의 지원을 허용하되 농업 부가가치 제고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강화하여 해당 농식품업체에 대한 지원 효과가 궁극적으로 농산물 생산분야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구체적으로, 농식품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의 경우 국내 농산물 생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금리를 조정하여 타 자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농업종합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공업체의 국산농산물 사용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농식품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고정화되어 특정 기업체에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금지원의 잔액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일반 농식품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금지원을 한 후 단계적으로 자금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함.
- 농업종합자금을 대출받은 농식품 기업 중 기업신용평가 실시 결과 일정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농업종합자금을 졸업하도록 유도함.[6]
- 즉,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농업종합자금의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을 타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협은행이 중개 역할을 맡음.

○ 구체적인 졸업방식은 타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영어자금은 2018년부터 10억 원 이상의 고액대출자에 대해 상환기한 도래 시 10%를 의무상환토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운전자금 총액을 25억 원으로 제한하되 중소기업벤처부 R&D 관련 기업에 한하여 R&D 기초역량 확충 사업의 총 참여횟수를 4회로 제한함.
- 미국에서는 FSA 자금을 최장 7년(신규진입농은 1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매년 대출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경영상태가 좋은 대출자의 경우 일반 상업금융 자금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함.

---

6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10년 보증지원 후 졸업제를 도입하고 있음.
타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 졸업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장을 참조

나. 시장 동향을 반영한 정책대출 관리

○ 농업종합자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차보전방식은 고정이차방식(변동금리 대출)과 변동이차보전방식(고정금리 대출)으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음.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변동 여부에 따라서 이차율이 달라짐.
- 고정금리로 대출된 자금은 이차보전 기준금리가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매번 변동되므로 이차율이 매년 달라지는 반면 변동금리로 대출된 자금은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하여 이차율이 고정됨(그림 2-9 참조).

〈그림 2-9〉 금리방식 별 이차율 계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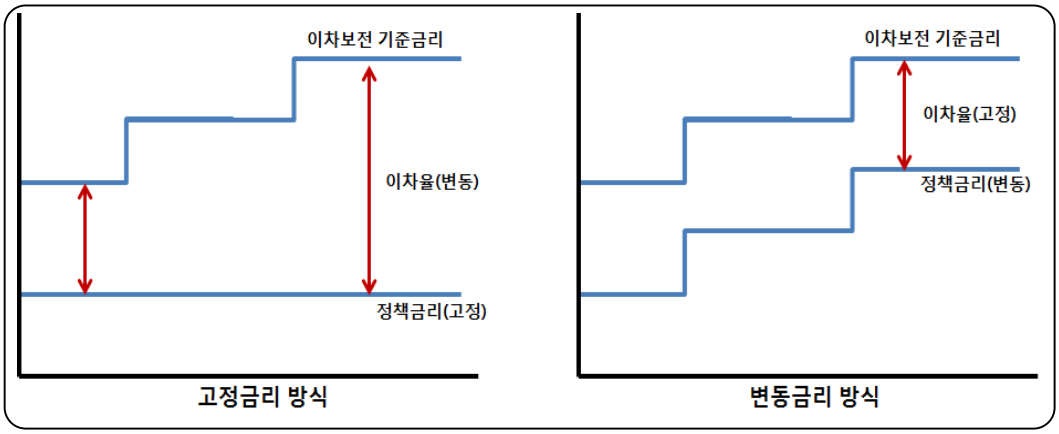

○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변동이차보전방식)은 이차보전 기준금리에서 실수요자 지원정책금리를 차감한 이차율을 평잔액에 곱하여 산출됨.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추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리 상승기에는 이차보전 금리도 상승하게 되어 농업종합자금 재정규모가 증가하게 됨.

○ 반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고정이차보전방식)은 대출금리가 시중금리에 연동됨.

○ 자금 수요자는 저금리 시 변동금리 대출, 시중금리 인상 지속 시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게 되는 등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이 달라짐.

○ 따라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농업인 등 정책사업자가 자금의 특성에 맞는 금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금융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 상환 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로 대출, 단기로 상환하는 운전자금의 경우 시장금리 여건에 따라 정책사업자에 유리하고, 안정적인 금리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이차보전 금리가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이차보전액 증가에 유의하여 금리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4.2.3. 경영지도 강화

○ 금융기관의 지도금융 기능을 활용하여 지원 농가의 부실화를 막고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의 경영지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농업종합자금 대출기관은 대출신청자의 경영상태, 경영능력, 채무구조 등 경영컨설팅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컨설팅에 적합한 주체임.

○ 그러나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경영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자금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자기 자본의 활용방안을 조언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특정 자금을 추천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경영컨설팅을 별도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 방식, 자금조달 규모, 자금 운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은 농업정책금융 종합컨설팅 부서 또는 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 시점에서는 경영실태조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대출담당자의 컨설팅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외부 서비스에 대한 중개 역할 강화, 컨설팅 업무에 대한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함.
- 경영실태조사결과를 외부에서 활용가능한 통계자료로 정리하여 축적하면 보다 내실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임.

4.2.4. 자금이용 편의성 제고

○ 농업종합자금의 인지도는 낮지 않은 편이지만 여전히 자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금에 대한 인지도는 농업인의 수혜 실적과 연관되는 만큼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농협은행,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의 출입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농업종합자금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대출담당자는 종합자금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

○ 농업종합자금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은 제출서류가 불필요하게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자금 대출기관은 자금의 타용도 전용, 부당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료로 인식하고 있음.

○ 농업종합자금은 지원 자격 확인과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서류를 받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실제 자금 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시설·개보수 자금의 경우 사업실적이나 설치 비용관련 증빙자료, 토지매입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운전자금은 필요한 경영컨설팅 계약서, 토지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함.

○ 이 중에서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서류들은 과감하게 줄이고 금융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내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불편함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제 3 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방안

1. 농업경영회생자금 운영 체계

1.1. 도입 배경과 목적

○ 농업경영회생자금은「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2는 2004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정부는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한·칠레 FTA 발효, WTO 농업협상의 진전 등에 의한 시장개방의 확대와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을 농가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특히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농가부채대책을 실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됨.

1.2. 운영 현황

1.2.1. 지원 조건 및 대상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에 근거하여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3/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출기간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규정됨.

○ 2018년 기준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1%이며 대출기간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임.
- 대출한도는 개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으로 농신보 보증한도와 일치한 수준임.

○ 지원 대상은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임.
- 단,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지원 요건이 성립됨.

- 농업경영위기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규정된 농업재해, 전기누전 또는 낙뢰 등에 의한 화재,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나 농산물 시장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감소, 수출 관련 손실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연체가 없었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을 포함함.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기존 농업 관련 채무의 대환이나 피해복구자금, 시설개보수 자금, 운영자금 등 경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상세 용도는 아래와 같음.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 경제사업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의 대환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 연대보증인이 타 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하였거나 대위변제할 예정인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 농업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는 신규대출 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용 대출의 연체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는 기존 부채의 대환자금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이용할 수 있음.

〈표 3-1〉 경영위기 유형별 자금용도 및 대출유형

구분	농업재해 등 발생 농가			농업대출 연체농
자금용도	시설/개보수	운전자금	대환자금	대환자금
대출구분	신규대출	신규대출	대환대출	대환대출
채권보전	신용/담보	신용/담보	기대출 채권보전에 따름	기대출 채권보전에 따름

○ 대환대출되는 자금은 기대출의 채권보전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됨.
- 신용대출인 자금은 신용대출로, 부동산 담보대출인 부동산 담보대출로, 농신보 보증대출인 자금은 농신보 보증대출로 대환대출됨.

1.2.2. 지원 절차

○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청함.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신청 농업인의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설치·운영함.

○ 경영평가단은 자금 신청 농업인의 기본자격 대상 여부를 평가한 후 자금 지원 적격이라고 판정된 자에 대해서 지원 규모를 결정함.
- 경영평가단은 대출 및 지도담당 책임자, 담당 심사역, 농업금융담당 팀장, 농업자금팀장 등으로 구성됨.
- 경영평가단은 사전평가를 통해 신청 농업인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을 구분함.
- “정상”은 자금지원 없이도 정상 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회생가능”은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지만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면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회생불능”은 경영위기에 처했으나 자금지원이 있어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의미함.
- 경영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등임.
- 사전평가 결과 회생가능 또는 회생불능 이지만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밀경영평가를 시행한 후 자금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검토하여 경영평가위원회에 부의함.

〈표 3-2〉 농업경영회생자금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 영농종사여부 확인증빙자료	□ 최근 2기 경영장부(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영농종사여부 확인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 최근 2기 결산 재무제표 등 □ 정관 또는 규약
개인·법인 공통	□ 회생(인수)자금 대출 신청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과세내역서 첨부) □ 예금 · 대출잔액증명원, CIF □ 사료 등 외상대금증명원 등 경제사업연체채권 증빙자료 □ 구.판매(출하)계약서 사본 □ 구.판매(출하)실적확인서 □ 동의서 □ 농업정책자금 인수도약정서(인수 자금 신청 시)	□ 지원사유 입증서류 - 행정기관 재해피해 사실확인서(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화재, 가축질병, 수출입 중단 등 관련자료) - 유통 정보지, 농협내부문서, 공판장(지역 포함) 경매가격정보 - 기타 신문, 방송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 기타 필요한 부속서류 - 자구해결 이행계획서 - 농업외 소득 입증자료(농업외 소득이 있을 경우) · 급여자료, 매출자료, 무통장 입금증 등
기타 필요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기타필요한 서류

자료: 농협 홈페이지(http://consulting.nonghyup.com/nh_consulting/agricultural/fund009.jsp 2018/05/28 검색)

○ 경영평가위원회는 경영체 유형(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을 심의·판정하고 대출규모를 결정하고 지원부적격 경영체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재심을 실시하고 자구계획 보완 지시를 내리는 등의 역할을 맡음.

- 경영평가위원회는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협·농신보 관계자 등 5인 내외로 구성되며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경영평가위원회는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일선조합에 설치됨.

○ 대출기관은 심의 결과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시행함.

- 사후관리는 전년말 기준 대출잔액 5,0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개선계획서 이행상태와 허위자료 제출 여부를 점검하는 것임.

〈그림 3-1〉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절차

자료: 농식품부, 『2018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18

2. 농업경영회생자금 운영 실적과 문제점

2.1. 운영실적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2003년 처음 지원되었으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율이 하락하여 2017년 회생자금 지원실적은 49억 원(지원율 8.2%, 2017년 12월말 기준)에 불과함.

○ 농업경영회생자금의 도입 초기에는 지원 인원이 2,000명을 넘겼으나 이후 지원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특히 2013년 이전까지 등락을 하던 지원 규모가 2013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3-3〉 연도별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실적(2017년 12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명, %

연 도	계 획	대출지원		계획대비지원율
		인원수	금 액	
2003	500	171	241	48.2
2004	2,000	2,115	1,639	82.0
2005	3,000	1,533	1,110	37.0
2006	2,000	678	361	18.1
2007	1,100	255	167	15.2
2008	1,000	165	144	14.4
2009	300	297	300	100.0
2010	500	209	198	39.6
2011	600	226	264	44.0
2012	600	151	196	32.7
2013	600	105	271	45.2
2014	600	83	132	22.0

(계속)

연 도	계 획	대출지원		계획대비지원율
		인원수	금 액	
2015	600	57	111	18.6
2016	600	46	75	12.5
2017	600	30	49	8.2

자료: 농협은행 내부자료

○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실적 감소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실적이 증가한 것과 대비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감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06년에 185명에 대해 42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시작으로 하여 2017년에는 896명에게 2,838억 원을 지원하였음.

2.2. 지원규모 감소 원인

2.2.1. 농가 부채 발생원인의 구조적 변화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기 대출된 자금의 대환자금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 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하였던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농가의 부채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그림 3-2).

-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3년에 농가의 연평균 농업용 부채는 1,746만 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1,062만 원이 됨.
- 같은 기간 농가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3%에서 5.2%로 하락함.

〈그림 3-2〉 농가 부채 추이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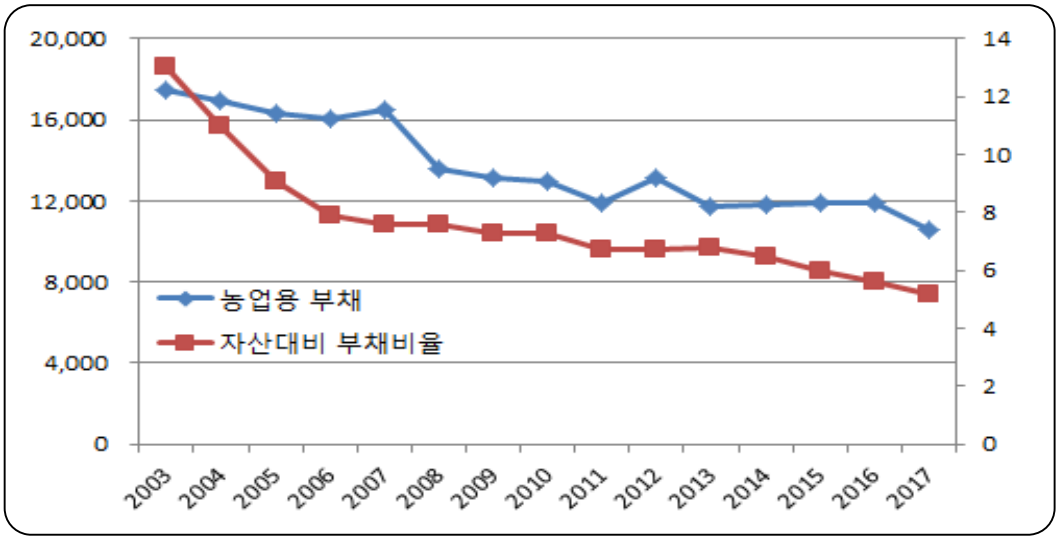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 농가부채 규모가 축소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및 개정을 통하여 정부가 농가의 부채 경감을 위하여 추진한 다양한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음.
- 부채대책이 추진되던 2001년 전후로 최대 연간 12조 4,000억 원에 이르던 농신보 보증은 농가부실화에 따른 대위변제 급증으로 인하여 신규보증조건을 강화하면서 규모가 감소하였음.
- 농업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농가수가 감소하면서 농가의 투자 의욕이 저하됨.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기존 농업용 부채의 대환 등을 지원하는 자금이므로 부채 규모가 전체적으로 축소되면 해당 자금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감소함.

○ 뿐만 아니라 최근 농업 관련 대재해의 발생 횟수가 감소하면서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의 필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2.2.2. 대출 취급 담당자의 자금 기피 현상

○ 대출 취급 담당자는 업무에 대한 책임 전가에 대한 우려와 사후관리 부담, 대출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신 등의 이유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기피하고 있으며 대출담당자의 소극적인 태도가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자금 지원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출 담당자가 해당 자금을 기피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원래의 대출이 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농업경영회생자금 담당자가 신규로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점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담당자가 기 대출 취급건의 이상 유무를 전부 검토해야 하는 업무상 부담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은 위험도 안고 있음.
- 경영회생자금 지원 후 채권이 다시 부실화되는 경우, 원래의 대출취급자에 대한 부실대출 책임은 모두 사라지고, 경영회생자금 취급자에게 기 대출 시 발생한 취급 부주의의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 담당자들의 추진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한다는 것은 다른 대출보다 더 부실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잠재적 부실위험은 다른 자금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으로 기피하게 됨.

○ 담당자가 자금을 기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자금의 사후관리 기준 금액이 대출 규모에 비해 낮아 담당자의 사후관리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임.

- 사후관리는 연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을 점검하는 것이며 주로 조합차원의 현지 실사로 이루어짐.
- 사후관리의 기준 금액은 전년말 잔액 기준 5천만 원 이상으로서 평균적인 대출 규모에 비해 낮은 편임.

○ 한편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이 되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취급자가 안을 수 있음.

- 사업시행지침서 상 제시된 예시는 참고자료로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므로 보다 제3자에 의한 경영위기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신청자의 자금을 승인하기 위하여 경영위기를 폭넓게 해석하면 대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농업경영위기 (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폭염,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 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 평균 대비 15%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2.2.3. 제도 상의 지원 저해 요소

○ 자금 수요자의 입장에서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낮은 대출한도,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자금 적기 공급 문제, 담보 평가의 불리한 점 등으로 인해 자금 매력도가 낮은 상황임.

○ 경영회생지원의 지원 한도가 농가의 투자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농업종합자금의 스마트팜과 농산물가공사업은 지원한도가 동일인당 50억 원, 수출 및 규모화는 42억 원인 것과 비교할 때 농업경영회생지원자금의 지원한도는 다소 낮은 편임.
- 개인 농가 중 최고액 농업용 부채는 11억 원 이상(농가경제조사 2016)이며 농업법인은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경영회생지원자금의 한도는 낮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스마트팜 등 정책자금의 지원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고액대출 건수가 증가하는 등 농업분야 투자 규모가 커지는 것을 감안하여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농가가 경영위기 발생 시 3년 이내 도래하는 농업용 부채 원금이 현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함.

○ 유리온실 등 시설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재평가 시 담보물의 평가액이 하락하여 농가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
-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최초 대출 시 담보물의 평가액과 대환시점의 담보물의 평가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지원이 불가능함. 이러한 차이점을 흡수하여주는 보완대책이 필요함.

○ 대출신청부터 지원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필요자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못함.
- 현재는 대출신청부터 지원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됨.
- 자금 규모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범위가 다른데 이로 인한 시간 지연이 발생함.
- 심사 의무 발생 기준은 중앙본부 5억 원 초과, 영업본부 3~5억 원, 시·군지부 1~3억 원, 일선조합 1억 원 이하로서 자금 규모가 커지면 상위 기관의 심사 의무가 발생함.

- 일선조합의 전결권은 1억 원 이하로, 현재까지 지원 총 5,245건 중 1,747건(33%) 정도만 상위기관 심사 없이 진행되었음.
- 상위기관 심사 시, 시간적 제약 등으로 건별 신청 시 바로 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분기별 1회 등 기간 단위로 진행되어 자체 전결보다 1.5~2배의 시간이 소요됨.
- 위원회 결과를 상위기관에서 통보하지 않고 취급조합에서 통보하기 때문에 여러 조합에 걸려있는 대출은 협조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
- 뿐만 아니라 서류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대출 승인을 받고도 감정 및 채권보전, 농신보 보증심사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지원이 어려움.

○ 경영회생자금 대출금은 채권보전별로 실행되는데 농업인의 경제사업채권은 대부분 무입보(신용)이므로 채무자의 신용한도가 부족한 경우 대출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함.
- 따라서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시 대손보전기금 대상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등(단, 대손보전 기금의 건전성을 감안 하여 검토) 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의 경합

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운영현황

○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회생자금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정책자금임.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 위기에 빠진 농가가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부채를 축소하되 매각된 자산을 임차하여 경영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임(농식품부 농지과 2018).
- 최근 3년 이내에 농업재해로 연 피해율 50% 이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농가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
- 자산 대비 부채비율 40% 이상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농업경영체는 이 외에도 환매가능성평가 지표가 100% 이상이고, 시설, 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 이상이어야 함.
- 단, 영농승계자가 없는 76세 이상 농업인, 상가-2주택 소유자, 농외소득이 50%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운영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이며 농어촌공사는 사업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대출실행 등 전 과정을 담당함.

○ 신청농가는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 매도하여 매각자금을 이용하여 부채를 상환함.

〈그림 3-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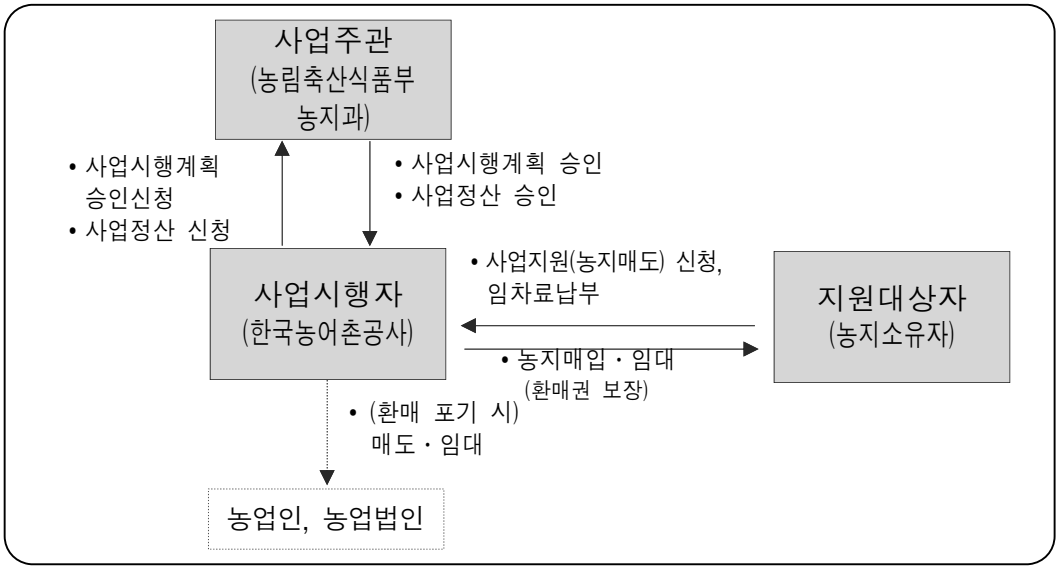

자료: 농식품부, 『2017 성과보고서』

○ 농어촌공사는 지원 농가의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농가의 경영상황이 호전되면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부여함.
- 임대료는 농지 및 시설물 매입가격의 1% 이내임.
- 환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매입가격에 농지매입가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매연수만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단, 농업용시설은 매입가격을 환매가격으로 정함).

○ 대상자 선정
- 경영위기 여부, 경영회생가능성, 전문성, 영농기반, 주변평가 등을 고려하여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 매입대상은 신청(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업용 시설임(농식품부 농지과 2018).
-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임대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시설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를 말함.
- 농업용 시설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이며 부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이면서 농지와 농업용 시설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축사 1,000㎡,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인 시설이어야 함.

○ 감정평가금액이 1㎡당 6만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매입 제외되며 지원한도는 개인 10억 원, 농업법인 15억 원임.

○ 최근 3년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예산은 2,600~2,900억 원이며 100%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표 3-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예·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2015	260,000	0	0	260,000	259,561	99.8
2016	260,000	0	0	260,000	258,438	99.4
2017	290,000	0	0	290,000	283,810	97.9

자료: 농식품부, 『2017 성과보고서』

나. 사업목적 및 지원범위 비교

○ 두 사업은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가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업목적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범위가 더 포괄적임.

- 농지매입사업은 기존 대출이 있는 농가만 지원을 하는 반면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신규대출도 취급하고 있음.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경영체 뿐만 아니라 해당 경영체를 인수하여 회생시킬 인수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대환이 필요한 농가에 있어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범위가 더 넓음.

- 농지매입사업은 농지자산 처분으로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나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가능하고 잔여부채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허용함.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부채비율이 300%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함.

○ 이에 농가의 부채 수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회생자금의 종류가 달라짐 (그림 3-4).

-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농가는 농지매입사업 지원을 받아 부채를 전액 상환하거나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이용하여 부채를 조정할 수 있음.

- 부채비율이 100~200%인 농가는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일부 상환하고 잔액은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방법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부채 전액을 대환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부채비율이 200~300%인 농가는 농지매입사업은 이용할 수 없으며 농업경영회생자금만 이용 가능함.
- 부채비율 200~300% 구간의 농업경영체는 타 그룹에 비해 경영회생제도의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이 적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4〉 자산대비 부채비율별 가용자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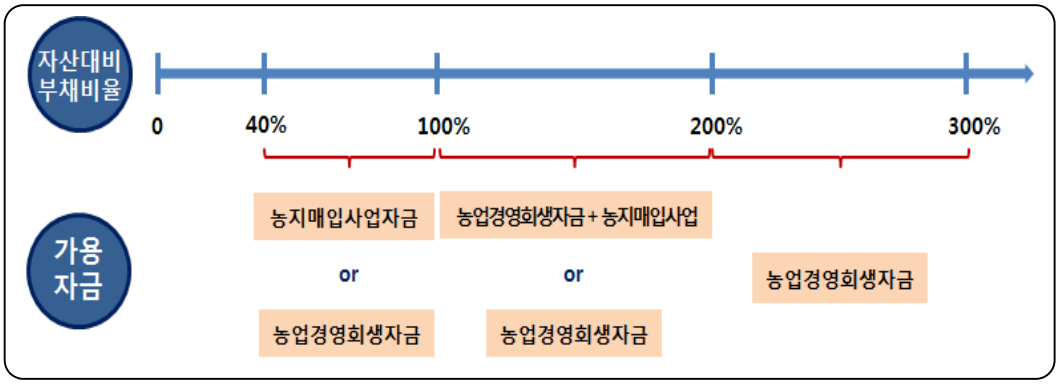

주: 위 내용은 대환이 필요한 농가에만 해당됨.

다. 대출조건 및 지원방식 비교

○ 두 사업은 이자부담, 대출한도, 생산기반유지 여부 등 지원조건은 동일하지만 지원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 두 사업 모두 고부채 농가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효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표 3-5〉 사업 간 대출조건 비교

구 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업경영회생자금
이자부담	농지 및 시설물 매입가격의 1%	대출금액의 1%
대출한도	개인 10억, 법인 15억	개인 10억, 법인 15억
대출기간	최대 10년 임대	10년
생산기반유지 여부	유지 가능	유지 가능
자산 소유권	공사로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소유권 회복	환매	변제이행
지원방식	자산-부채 비율 조정	부채구조조정

〈그림 3-5〉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매매사업 지원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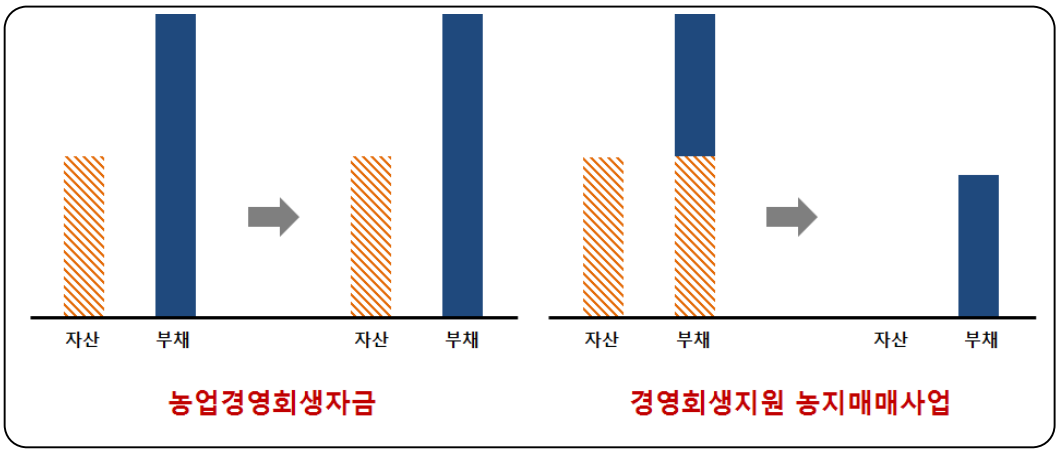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산-부채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지만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부채 구조조정 방식으로 부채로 인한 부담 완화 효과는 농지매입사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자산-부채 비율 조정방식은 자산을 이용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함으로써 부채 부담 자체가 축소되지만 부채 구조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이자부담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임.
- 농업경영회생자금이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주도록 부채구조 조정에 그치고 있는 데 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이 자산을 활용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라. 행정절차 비교

○ 농지매입사업은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안고 있는 대출담당자의 취급 부담, 의사 결정 지연 등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농지매입사업은 지원 대상의 기준이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비해 명확함.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지원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농지매입사업은 재해 피해율과 농가채무액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기준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 농지매입사업은 대출심사 과정이나 제출서류가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비해 단순하여 의사 결정이 빨리 이루어짐.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신청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평균 2~3개월이 소요되지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신청부터 지원에 이르는 기간이 약 1개월임.

○ 이는 각 사업에서 심사 단계의 구조, 채권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농지매입사업은 감정평가대상자 선정을 총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농업경영회생자금은 4단계의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침.

○ 농지매입사업은 지원금액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자 선정기관에 차등을 두고 있음.
- 2억 원 이하(지사장),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지역본부장), 5억 원 초과(공사장)
- 지사장은 신청서 접수, 경영진단반 구성・운영, 현지조사, 농업경영실태 평가, 지사심의회를 통해 2억 원 이하 지원적격자를 감정평가 대상자로 선정하고 2억 원 초과 지원적격자는 지역본부장에게 추천함.

- 지역본부장은 심의반을 구성하여 지사 추천자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및 평가의 적격성 검증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채규모가 5억 원 이하인 지원적격자는 감정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고, 5억 원 초과 지원적격자는 본사에 추천함.
- 공사장은 지역본부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본사 농지은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본부에 통보함.

〈표 3-6〉 사업별·자금규모별 지원대상 심사 주체

사업명	1억 원 미만	1~2억 원	2~3억 원	3~5억 원	5억 원 초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사장		지역본부장		공사장
농업경영회생자금	일선조합	시·군지부		영업본부	중앙본부

○ 농지매입사업은 신청농가의 자산으로 채무구조조정을 하므로 담당자가 원대출의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농업경영회생자금과 같이 담당자가 취급을 꺼리게 되는 요소가 없음.

3.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방안

3.1. 대출 취급 관련 개선방안

3.1.1.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한도 조정

○ 원예특작축산 등 농업 생산 분야, 스마트팜, 수출 및 규모화 자금을 개인과 농업법인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잔액 분포를 살펴봄.

○ 기존 농업종합자금의 최대 한도를 고려하면 현재 농업경영회생자금의 한도는 다소 낮다고 할 수 있음.

- 스마트팜 자금의 한도는 연 50억 원이며 2018년에는 최대 30억 원 한도의 청년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자금을 신설함.
-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및 규모화 자금의 지원한도는 동일인당 5억 원 이상 42억 원 이하임.
- 따라서 이들 자금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고자 할 경우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지원받지 못함.

○ 뿐만 아니라 농가경제조사를 통해 개인 농가의 농업용 부채 규모를 살펴본 결과, 화훼농가, 축산농가의 평균 농업용 부채는 1억 원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며 특작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농업용 부채 최댓값이 3~11억 원 수준이었음.

- 농가경제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대농가를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전체 농가의 농업용 부채는 이보다 클 것으로 판단됨.

〈표 3-7〉 농가유형별 농업용 부채 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논벼농가	과수농가	채소농가	특작농가	화훼농가	전작농가	축산농가	기타농가	2종겸업
평균	33.9	35.4	33.4	9.6	95.2	35.8	93.1	57.7	20.2
최댓값	299.5	533.9	546.1	260.9	303.7	357.2	1,072.2	527.1	770.0

자료: 통계청, 『2017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미래의 자금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 스마트팜 등 기술개발과 농업 생산이 접목된 형태의 첨단농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규모 자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 기존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한도, 농업용 부채 현황, 대규모 자금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농업경영회생자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인상폭은 현재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에서 두 배로 증가한 15억 원과 30억 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개인에게 적용하는 한도는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개인 농가의 농업용 대출 최고금액이 약 11억에 이르고 있다는 점과 최근 농신보 개선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법인 한도는 수출 및 규모화 자금을 이용하는 농업회사 법인의 건별 잔액 규모를 판단근거로 이용하였는데, 15억 원 이하의 대출건수는 전체 건수 중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30억 이하의 대출 건수는 98.9%를 차지하고 있어 한도액을 30억 원으로 올릴 경우 대부분의 수출 및 규모화 자금의 대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스마트팜 및 수출규모화 등 미래의 농업 투자확대를 고려하여 지원 추이를 면밀히 살펴본 후 한도를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3.1.2. 대출심사 단계 축소

○ 심사 소요기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대출심사 단계를 축소하고 일선조합의 심사의무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4단계(일선조합-시·군지부-영업본부-중앙본부)에서 3단계(일선조합 및 시·군지부-영업본부-중앙본부)로 심사단계를 축소하고 일선조합과 시·군지부의 심사의무기준을 상향 적용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의 형평성, 농가의 농업용 대출 규모를 고려하면 일선조합의 심사 기준을 3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1.3. 대출 담당자의 취급 및 유인 확대

○ 농업경영회생자금의 담당자가 과거 자금의 문제에 대해서 취급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금 대환시 농신보 보증 자금은 농신보로, 신용 대출은 신용으로 대환하게 되므로 농신보와 대손보전기금에 면책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대손보전기금 대상 자금으로 편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단, 대손보전기금의 건전성을 전제로 함).

○ 현재 사후관리 기준이 5천만원 이상으로 평균 대출금액 대비 다소 낮아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영회생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우대 지원이 필요함.
-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는 인사에 있어서 경영회생자금 취급 건수를 우대조건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출담당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

3.2 농업경영회생자금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간 연계 강화

○ 농가의 부채 부담 감소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대상자 선정 시 상호 수혜자를 인정해주고, 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음.

-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여부 결정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판정됨.
- 농지매입사업 신청자의 경우 부채의 전액 상환이 원칙이지만 부채의 50% 이상을 자산 매각으로 상환할 수 있고 잔여 부채는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허용함.
- 농어촌공사는 농협중앙회의 협조를 얻어 농협은행의 영업장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동영상, 인쇄물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두 사업간의 연계 수준은 두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사업 지원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고려하는데 그치고 있음.

○ 그 결과 일부 농가는 두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데 두 사업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홍보의 수준을 넘어 신청자가 타 사업도 함께 신청하게 하는 수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
- 예를 들면, 농업경영체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적극 권장하여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잔액은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도록 권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농협은행은 신청 농가의 자산 및 부채 정보를 활용하여 채무 조정 컨설팅을 수행하고 신청농가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함.

○ 동시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주체가 농업경영회생자금 연계 지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주체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지매입사업 지원 요건 중 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 가능하고 나머지 자금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한다는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이로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을 동시에 활용하지 못했던 농가도 두 사업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됨.

제 4 장

요약 및 결론

1. 농업종합자금 개선 방안

○ 농업종합자금은 정책자금의 지원 효율성 제고, 시장 흐름에 발맞춘 자금 지원,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운영을 모토로 도입되어 농업정책자금의 새로운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 타 농업정책자금과 비교할 때 민간 활용도가 높고 시장성·사업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술금융의 농업 분야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감당함.

○ 이 연구에서는 농업종합자금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과제가 제시되었음.

○ 최근 농업 융·복합화, 유통 및 수출확대 등으로 농업영역이 확대되면서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범위가 생산 분야를 넘어서 가공·유통·수출 분야로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짐.

○ 그러나 농업종합자금의 본연의 지원 대상이 생산분야의 경영체인 만큼 농업종합자금의 농산물가공 및 수출지원 등에 대한 지원은 농업 생산분야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수출 및 규모화 자금을 농업 생산 분야와 생산 외 분야(가공, 유통)로 구분하여 농업생산 분야 자금은 원예·축산 분야 재배·생산사업으로 통합하고 생산 외 분야는 농산물 가공사업과 통합함.
- 또한 쌀 가공산업지원사업은 가공사업지원과 통합함.

○ 농업종합자금의 지원범위가 생산 분야에서 가공 및 수출로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에도 일반 식품기업이 포함되고 있음.

○ 원칙적으로는 농식품 기업에도 농업종합자금의 지원을 허용하되 농업 부가가치 제고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강화하여 해당 농식품업체에 대한 지원 효과가 궁극적으로 농산물 생산분야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농식품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고정화되어 특정 기업체에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금지원의 잔액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일반 농식품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금지원을 한 후 단계적으로 자금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정 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사업실적이 양호한 기업은 농업종합자금 외 일반 금융기관의 융자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타 분야나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 졸업제도를 참고하여 농업종합자금의 고정화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농업종합자금의 지도금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경영실태조사는 단년도의 재무 및 손익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넘어서서 피지원경영체의 중복수혜 여부, 지원금액 쏠림 현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개편이 필요함.
- 경영실태조사 대상 경영체의 종사 산업 분야, 경영규모, 업력 등의 자료가 추가된다면 보다 내실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대출담당자가 경영컨설팅을 함께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 구조를 개선하여 농협은행이 별도의 경영컨설팅 조직을 구성하거나 외부의 경영컨설팅 가능 주체를 연결시켜주도록 함.
- 대출담당자가 경영컨설팅에 대한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출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이차보전 금리가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이차보전액 증가에 유의하여 금리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농업종합자금의 인지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농협은행,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의 출입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농업종합자금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대출담당자는 종합자금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
- 이 중에서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서류들은 과감하게 줄이고 금융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내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불편함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업경영회생자금 개선 방향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지속적인 자금 수요감소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몇 가지 검토 과제가 제시됨.

○ 우선 농업경영회생자금의 담당자가 과거 자금의 문제에 대해서 취급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금 대환시 농신보와 대손보전기금에 면책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손보전기금의 건전성을 전제로 신용대출을 대손보전기금 대상 자금으로 편입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농업종합자금과 같이 정책자금의 지원 한도, 농업용 부채 현황, 대규모 자금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농업경영회생자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인상폭은 현재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에서 두 배로 증가한 15억 원과 30억 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팜 및 수출자금 등 대규모 자금의 투자추이를 지켜보고 추후 한도 추가 증액을 검토할 수 있음.

○ 대출심사 단계를 축소하고 일선조합의 심사의무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4단계(일선조합-시·군지부-영업본부-중앙본부)에서 3단계(일선조합 및 시·군지부-영업본부-중앙본부)로 심사단계를 축소하고 일선조합과 시·군지부의 심사의무기준을 상향 적용함.

○ 농업경영회생자금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합사업으로서 일부 농가는 두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데 두 사업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홍보의 수준을 넘어 신청자가 타 사업도 함께 신청하게 하는 수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
- 농협은행은 신청 농가의 자산 및 부채 정보를 활용하여 채무 조정 컨설팅을 수행하고 신청농가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함.

부록 1

타산업 및 해외농업분야 정책금융 운영사례

1.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1.1. 국내 중소기업정책금융 지원 체계

○ 국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중소기업의 가용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 담보력 또는 신용도를 보완하는 제도
- 정책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 첫 번째 유형인 가용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로는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무제도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구 총액한도대출제도) 등이 있음.
- 중소기업의무대출은 대출금 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부도 1-1〉 중소기업 정책금융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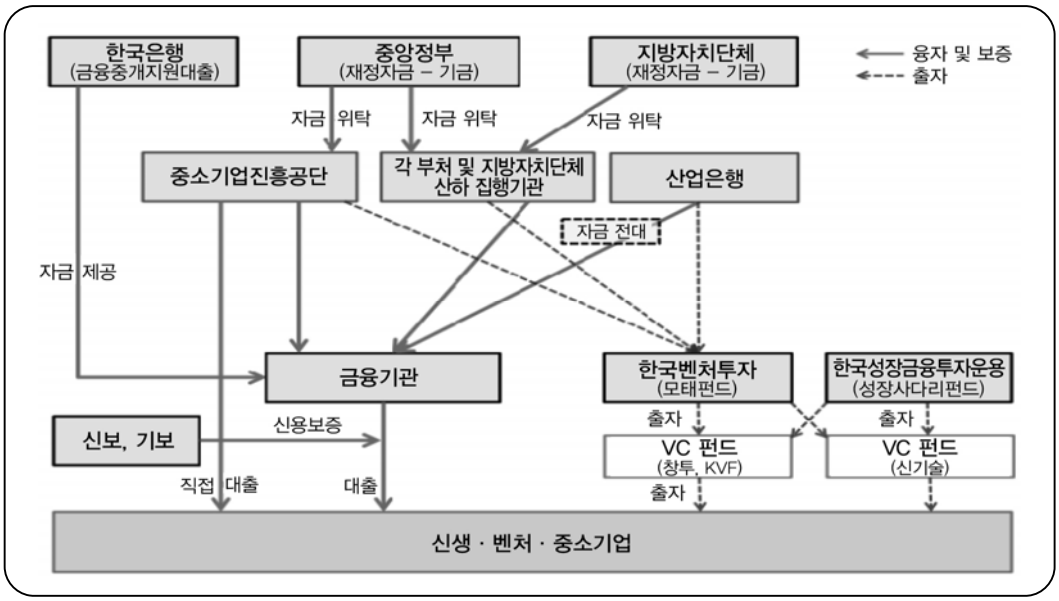

자료: 구정한 외, 2015(중소기업연구원(2017)에서 재인용)

○ 두 번째 유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제도임.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채무 이행을 보증함.

○ 세 번째 유형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정책금융공사가 융자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임.

-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한 자금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함.

○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모태펀드, 지자체의 지압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은행의 온렌딩 자금 등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농업종합자금이나 경영회생자금과 같은 농업정책자금과의 비교를 위하여 세 번째 유형의 정책자금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함.

1.2.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운영 정책자금

1.2.1. 중진공 융자사업의 특징

○ 중진공이 운영하는 정책자금은 창업예비자 및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자금, 신성장 기반, 개발기술사업화 및 사업전환 자금, 긴급경영안정, 소상공인 자금, 투융자 복합금융 등이 있음.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기업의 신용도가 상승하면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지원되지 않음.

〈부표 1-1〉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요약

지원대상/목적	자금명	지원대상	자금용도	지원방식
창업	창업기업지원자금	업력 5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창업준비자	시설자금 운전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중소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5년 이상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중견기업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중견기업 또는 규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직접대출
	온렌딩	중견기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KoFC 프론티어챔프	중견기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직접투자	
구조조정	사업전환자금	중소기업 (3년 이상 영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설자금 운전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일반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규모 기준 없음	시설자금 운전자금	
	정보통신 응용개발지원사업	규모 기준 없음	기술개발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규모 기준 없음	시설자금 운전자금	직접대출
경영회생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에 빠진 기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직접대출

○ 중진공의 융자 사업 지원대상은 업력 3년 미만의 사업체 또는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업 전환이 필요한 업체, 일시적 경영악화 상태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표 3-8 참조).

- 그 결과 자금별로 지원받은 업체의 평균 업력에도 차이가 나타는데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받은 업체의 평균 업력은 3.4년이며 온렌딩 대출 지원기업의 평균 업력은 17.4년임(박재성 2017).

○ 중진공의 융자자금은 신용도 BB이상의 기업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자력으로 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온렌딩이나 신용보증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표 3-9).

-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의 융자사업으로 지원하며 온렌딩이나 신용보증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됨.

〈부표 1-2〉 신용등급별 정책금융 분담 구조

<table>
<tr><th>신용등급</th><th>건정성</th><th>중진공</th><th>온렌딩</th><th>신용보증</th></tr>
<tr><td>AAA~A</td><td rowspan="4">정상</td><td rowspan="3">지원제외</td><td>지원제외</td><td rowspan="3">은행대출보증</td></tr>
<tr><td>BBB</td><td rowspan="3">신용·일부 담보대출</td></tr>
<tr><td>BB</td></tr>
<tr><td>B</td><td>신용대출</td><td rowspan="4">정책자금보증</td></tr>
<tr><td>CCC</td><td>요주의</td><td rowspan="2">신용·보증대출</td><td rowspan="4">지원제외</td></tr>
<tr><td>CC</td><td>고정</td></tr>
<tr><td>C</td><td>회수의문</td><td rowspan="2">담보·신용대출</td><td rowspan="2">지원제외</td></tr>
<tr><td>D</td><td>손실</td></tr>
</table>

주: 지원 사업별로 등급 기준은 다를 수 있음.
자료: 중소기업청(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4)에서 재인용)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부분이 중진공의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음.[7]

-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은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조건 결정 등의 권한이 정부에 있어 이차보전 방식에 비해 정책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음.
-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방식에서는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정책대상자가 자금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임.
- 그러나 재정 소요규모가 크고 민간 금융기관의 자원 활용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전체적인 효율성 달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부표 1-3〉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

구분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력 5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준비자 저신용자 기업인 만 39세 이하 대표인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준비자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등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업력 5년 이상의 중소기업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긴급경영안정) 재해피해, 경영애로상태의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융자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는 기업
자금 용도	시설자금(생산설비, 장비, 정보, 서비스. 사업장 확보 및 건축자금 등) 운전자금(창업 소요비용, 생산 및 경영비용 등)	시설자금(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설비, 장비 등의 소요자금 운전자금(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시설자금(생산설비, 장비, 정보, 서비스. 사업장 확보 및 건축자금 등) 운전자금(시설자금을 융자박은 기업의 초기가동비)	(긴급경영안정) 원부자재 구입비용, 제품 생산 및 개발, 시장개척 등 (수출금융지원) 수출계약, 수출품 생산비용 등
대출 한도	(기업 당) 시설자금: 45억 원 운전자금: 5억 원	(기업 당) 시설자금: 20억 원 운전자금: 5억 원	(기업 당) 시설자금: 45억 원 운전자금: 5억 원	(긴급경영안정) 기업 당 연간 5억 원(3년 간은 10억 원) (수출금융지원) 기업 당 연간 10억 원 이내
대출 기간	시설자금: 8년(3년 거치) 운전자금: 5년(2년 거치) 청년전용창업자금: 시설, 운전 구분없이 3년(1년 거치)	시설자금: 8년(3년 거치) 운전자금: 5년(2년 거치)	시설자금: 8년(3년 거치) 운전자금: 5년(2년 거치)	(긴급경영안정) 5년 이내(2년 거치) (수출금융지원) 180일
대출 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융자 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직접대출	직접대출, 대리대출	직접대출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5).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제도」

7 이차보전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있음.

〈부표 1-4〉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계속)

구분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정보통신 응용개발지원사업
지원 대상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	(이익공유형) 기술개발,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크며 일정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성장공유형)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않은 기업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자금 용도	시설자금(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설비, 장비 등의 소요자금) 운전자금(제품생산비용,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관련 소요비용)	시설자금(생산설비, 장비, 정보, 서비스 등) 운전자금(창업 소요비용, 생산 및 경영비용 등)	SW·컴퓨팅, 차세대통신네트워크 등에 지원 (일반담보대출) 부동산 등 물건담보를 이용 (기술담보대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서를 이용
대출 한도	(기업 당) 시설자금: 45억 원 운전자금: 5억 원	(성장공유형 대출) 시설자금: 45억 원 (지방소재 기업은 5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	과제 당 최고 20억 원이며 소요연구개발비의 80%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기간	시설자금: 8년(3년 거치) 운전자금: 5년(2년 거치)	(성장공유형 대출) 5년 이내(2년 거치)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 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이익공유형) 고정금리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됨. 고정금리는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0.2%p를 차감 업력 5년 미만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업력 5년 이상 시설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운전자금: 0.6%p 가산 (성장공유형)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변동금리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에서 1%p 차감
융자 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직접대출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5).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제도」

〈부표 1-5〉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계속)

구분	온렌딩	KoFC 프론티어챔프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대상	업력 3년 이상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 10억 원 이상인 기업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우대대상: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산업,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정부의 'World Class 300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환경기술 및 산업 영위기업
자금 용도	시설자금(생산설비, 장비, 정보, 서비스 등) 운전자금(창업 소요비용, 생산 및 경영비용 등) 신용위험분담제도(온렌딩대출 원리금 미회수 위험을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일부 분담)	시설자금(생산설비, 장비, 정보, 서비스 등) 운전자금(창업 소요비용, 생산 및 경영비용 등) 직접투자(공모사채인수 등)	환경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환경개선자금(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대출 한도	(중소기업) 시설자금: 1~50억 원 운전자금: 1~20억 원 (기업별 사용한도는 100억 원) (중견기업) 시설자금: 1~250억 원 운전자금: 1~100억 원 (기업별 사용한도는 500억 원)	시설자금: 300억 원 운전자금: 100억 원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개발기술사업화 10억 원 성장기반, 해외진출자금 5억 원 유통판매지원 2억 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시설 25억 원, 개발기술사업화 10억 원, 기술개발 4억 원, 경영안정자금 5억 원, 유통판매지원 2억 원 (환경개선자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30억 원
대출 기간		시설자금: 3~20년 이내 운전자금: 3년 이내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개발기술사업화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상환), 나머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시설, 개발기술사업화, 기술개발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상환), 나머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환경개선자금) 7년 이내(3년 거치 4년 상환)
대출 금리	온렌딩재출 금리는 온렌딩 기준금리 + 스프레드로 구성됨. (온렌딩 기준금리) 자금유형(시설, 운전)에 따라 채권기준금리 또는 CD기준금리와 연동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 (스프레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정한 금리 상한 범위 내에서 각 중개금융기관(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	변동금리이며, 환경,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2.85% 환경개선자금 2.89%

○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달리 농업종합자금은 단일한 재원으로 여러 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규모나 영농경력 등 성장 단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농업종합자금은 심사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신청인의 경영능력 등 비재무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영농경력이 짧은 창업 단계의 농업인은 사실상 종합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 자금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 정책자금의 대출방식에 있어서도 중진공의 융자사업과 농업종합자금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중진공의 융자사업이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농업종합자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농업종합자금은 중진공의 융자사업에 비해 민간의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출심사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농협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융자 재원 또한 농협은행의 재원을 이용하고 있어 민간 자원의 활용도가 높고 재정 절감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1.2.3. 중소기업 정책자금 졸업제도[8]

가. 도입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금액 및 횟수가 중복·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함.

- 최근 10년간 (2008~2017년)운전자금을 25억 원 이상(누적) 받은 기업이 326개사이며 해당 기업의 평균 지원 횟수는 6.17인데 이는 전체 평균 1.37회보다 4.5배 높은 수준임.

---

8 본문의 내용은 중소기업벤처부(2018), 『조직혁신 TF 활동결과 발표문』의 내용을 참고함.

- 지원횟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운전자금을 6회 이상 받은 기업은 468개사이며 이들의 평균 지원금액은 25.58억 원으로서 전체 업체당 평균 2.36억 원의 10.8배에 이름.

〈부표 1-6〉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금액별 업체 수

단위: 개사, %

구분	5억 미만	5~ 10억	10~ 15억	15~ 20억	20~ 25억	25~ 30억	30~ 50억	50~ 100억	100억 이상	총계
업체수 (비중)	73,529 (88.20)	7,155 (8.58)	1,604 (1.92)	540 (0.65)	210 (0.25)	122 (0.15)	142 (0.17)	58 (0.07)	4 (0.01)	83,364 (100.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벤처부(2018)에서 재인용)

〈부표 1-7〉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횟수별 업체 수

단위: 개사, %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상	총계
업체수 (비중)	63,310 (75.95)	13,617 (16.33)	3,980 (4.77)	1,422 (1.71)	567 (0.68)	227 (0.27)	130 (0.16)	64 (0.08)	27 (0.03)	20 (0.02)	83,364 (100.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벤처부(2018)에서 재인용)

○ 그러나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횟수와 금액에 비해 수혜기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평균 수준에 머무르거나 오히려 지원 횟수가 많을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8.7%, 6회 이상 운전자금 지원 받은 기업은 9.0%, 10회 이상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8.7%임.

○ 특정 기업에 자금이 편중되는 것은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창업기업 또는 타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기 때문에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서 특정기업이 중복적·고정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원금액의 편중,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정한 횟수나 금액이상의 정책자금을 받을 경우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를 도입함.

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졸업제도 개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졸업제도 발동요건[9]

-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운전자금 총액을 25억 원으로 제한함.
- 누적 지원 금액이 25억 원 이상 넘어갈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음.
- 단, 중소기업벤처부 R&D 관련 기업에 한하여 지원 금액 총액 대신 지원 횟수를 기준으로 졸업제도를 운영함.
- R&D 기초역량 확충이 주 목적인 사업을 졸업제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총 참여횟수를 4회로 제한함.

○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졸업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성과연동형 졸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계획 중임.

- 예컨대, 일정기준 이상의 성과 우수기업은 졸업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업은 졸업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임.

○ 중소기업 R&D 졸업제는 부처 협의를 통해 타 부처 R&D에도 적용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정부 R&D를 수행했음에도 사업화에 실패한 기업에게도 일정 기간 재도전 기회를 주되, 여러 차례 지원을 받고도 성과가 미흡한 기업은 퇴출시키는 방향을 고려중임.

---

9 본 내용은 뉴시스통신사, 2018.01.11. '中企 정책자금 지원졸업제 도입…25억원 한도' 기사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1_0000200281, 2018.09.07. 자료검색).

1.3. 신보·기보의 경영위기업체 지원제도

1.3.1. 신용보증기금

가. 재기지원보증

○ 실패한 기업주(신보 단독채무자)의 기술 및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지원제도임.

○ 지원대상
- 실패한 기업: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 재도전 기업주[10]가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인 기업

○ 지원내용
- 실패한 기업이나 재도전 기업주에게 구상채무 변제자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함.
- (회생지원)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변제자금을 지원함.
- (신규지원) 구상채무 변제자금과 함께 추가 신규자금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함.
- 또한, 재기지원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동반하여 지원하고 있음.

10 재도전 기업주란 실패한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구상채권의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을 말함.

○ 보증한도[11]

- 같은 기업에 대하여 30억 원 이내로 설정됨.
- 신규자금으로 운전자금의 경우 최근 1년 또는 추정매출액의 1/3~1/6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임.

○ 우대사항

- 일반보증과 달리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는 1년에 1.2%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부도 1-2〉 신용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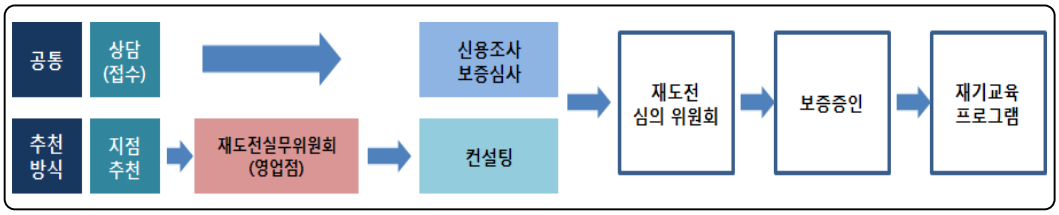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https://www.rechallenge.or.kr/)

나. 재창업지원보증

○ 실패한 기업주(다중채무자)의 기술 및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

- 실패한 중소기업인[12]이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재기를 위해 대표자(대표이사 포함)로서 재창업하여 운영하는 신설기업[13]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사업성평가를 의뢰한 기업이 대상임.

---

11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재기보증 사업설명을 참고함(https://www.rechallenge.or.kr/index.9is?contentUid=f5b4250e5a4b22f0015a5f4d8bc82792).

12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운영이 종료(폐업)된 상태에 있는 개인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13 타인사업 승계 등 실질적인 재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14]

- (자금지원)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창업자금(운전, 시설자금)을 지원함.
-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지원기준에 의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상환유예)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채무금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함.
- 조정 후 채무금액이 2억 원 이하는 최장 3년 유예, 조정 후 채무금액이 2억원 초과할 경우 최장 5년 유예됨[15].
- 상환기간은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 보증한도

- 같은 기업에 대하여 30억 원 이내로 설정됨.
- 단, 운전자금의 겨우 10억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 지원절차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지원 신청접수
②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으로 사업성 평가 의뢰
③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성 평가 후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④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합의서 체결 및 신용관리교육을 시행
⑥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

---

14 본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사업설명을 참고함(https://www.ccrs.or.kr/debt/program/company/info.do).

15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

1.3.2. 기술보증기금[16]

가.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 지원대상

-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 재도전 기업주(실패한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무한책임사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임.

○ 지원내용

- (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함.
- (회생지원보증)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을 지원함.
- (신규보증)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보증(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지원

○ 보증한도

- 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결정됨.

○ 지원절차

①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상담, 기업조사, 기술평가, 보증심사

② 재기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재기지원 심의·승인(도덕성 평가 포함)

③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채무조정 또는 회생지원보증 및 신규보증을 실행함(사후관리 실시).

---

16 본문의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ibo.or.kr/src/guarantee/kba800.asp)의 사업내용을 참고로 작성함.

〈부도 1-3〉 기술보증기금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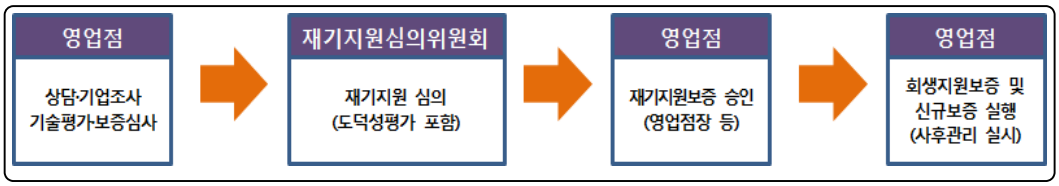

자료: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나.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지원대상

- 개인기업 , 법인기업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운영하면서 경영위기로 실패한 기업
- 실패기업 관련 채무의 신용회복절차가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임.
-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함.

○ 지원내용

- (신용회복지원) 상각채권 또는 연체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함.
- (신규보증)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보증(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지원함.

○ 보증한도

- 같은기업 당 30억 원 이내(단, 신규 운전자금은 10억 원 이내)로 설정됨.

○ 지원절차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지원 신청·접수(신용회복지원)
②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으로 사업성 평가 의뢰
③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사업성 평가 후 재창업보증을 신청·접수
④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지원 결정
⑤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재창업보증 실행(사후관리 실시)

2. 외국의 농업분야 정책금융제도

2.1. 미국 농업정책금융

2.1.1. 농업정책금융 구조

○ 미국의 대표적인 농업정책자금 공급기관은 Farm Service Agency(FSA)임.
- FSA는 전통적인 형태의 정책자금 공급 기관으로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자력으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는 농업인에 대하여 직접 대출을 시행하기도 하고 신용보증을 제공함.
- 민간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준다는 의미에서 최후의 대부기관으로 불림.
- FSA는 신규 진입 농업인에게 농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최초의 대부기관으로 불리기도 함.

○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 관련 기관(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에는 Farm Credit System(FCS)과 Farmer Mac이가 있음.
- FCS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대출기관이며 농업인에게만 대출을 실시하도록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임.
- Farmer Mac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인으로부터 담보를 사고 담보 대출 증권을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 외에 농업자금 공급처에는 일반 상업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개인 자본이 있음.

〈부도 1-4〉 미국 농가부채의 기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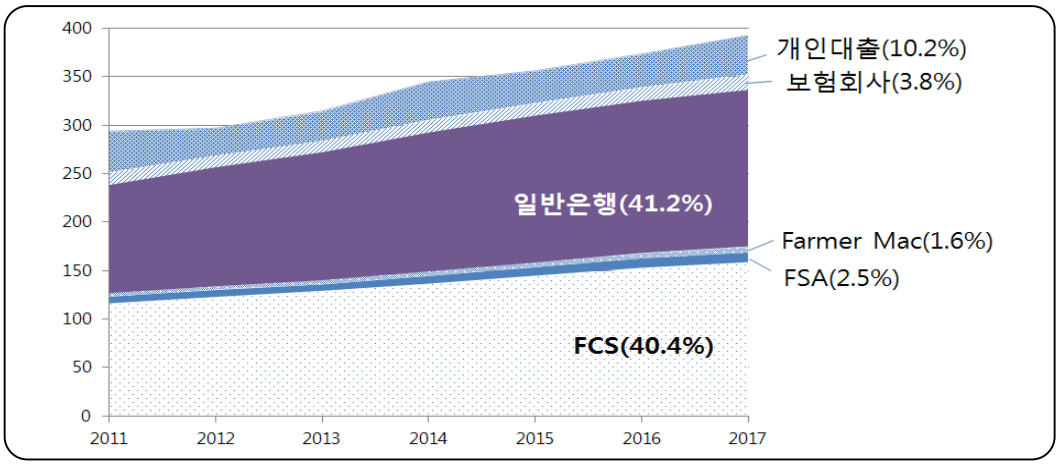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year-end data (https://www.ers.usda.gov/data-products/farm-income-and-wealth-statistics/data-files-us-and-state-level-farm-income-and-wealth-statistics/) 2018/09/16 검색

○ 농업자금 공급에서 정책자금과 일반 민간자본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농가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 상업 금융이며 2017년 기준 전체 농가 부채의 41.2%를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FCS가 4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자본 10.2%, 보험회사 3.8%, FSA 2.5%, Farmer Mac 1.6% 기준임.

2.1.2. 미국 FSA 융자 프로그램

가. 개요

○ 미국 FSA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융자 프로그램은 크게 시설 및 농지 자금과 운영 자금 지원으로 나뉘어짐.

- 시설 및 농지자금은 농장 구매 또는 확장, 농업용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자금, 토양객토 및 수리시설 관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 운영과 관련된 자금은 농업용 기자재 구입, 가축구입, 농업용 기계 구입, 기존 대출자금의 대환 자금 등을 의미함.

○ 자금 지원 방식은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이 있음.

○ FSA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농업경영체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융자 또는 보증 대출을 시행하고 있음.

- 지원대상 조건에 민간 금융기관 대출을 거절당하였거나 FSA 보증이 없이는 대출승인이 어려운 경영체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부표 1-8〉 FSA 융자 지원 대상

구 분	신 청 자 격
직접대출	· 농지구입자금: 3년 이상의 영농경력 · 신규농가자금: 10년 미만의 영농경력, 농장을 소유한 경우 해당 카운티 평균 영농규모의 30% 미만인 자 · 신규농가 할부금융: 적어도 농지가격의 5% 현금 할부지불이 가능 ·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거주자 · 법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성인 · 민간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경력 · 양호한 신용정보 보유자(기간 내에 각종 청구대금 지급) · 가족농 규모의 농장 운영 계획 보유자 · FSA 대출금의 상환불이행 경력이 없는 자 · 미국 정부 대출금 지불 연체가 없는 자
신용보증	·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거주자 · 양호한 신용정보 보유자(기간 내에 각종 청구대금 지급) · 법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성인 · 민간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FSA 보증 없이는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는 자 · 과거에 3회 이상 FSA의 채무면제로 손실을 입힌 경력이 없는 자 · 가족농 규모의 농장 운영 계획 보유자 · 미국 정부 대출금 지불 연체가 없는 자

자료: USDA/FAS (www.fsa.usda.gov)

○ 융자 프로그램은 신규 진입 농가와 3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농가, 긴급하게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농가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대출금리는 직접대출의 경우 3.75%(시설 및 농지자금), 4.15%(운전자금)이며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대출기관 평균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함.

○ 대출기간은 시설 및 농지자금의 경우 40년, 운전자금은 1~7년으로 농업종합자금보다 긴 대출기간을 부여함.

○ 직접대출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는 시설 및 농지자금과 운전자금 모두 30만 달러이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0만 달러까지 지원함.

○ 신용보증 한도는 139만 9,000달러이며 빈곤농 및 신규농에 대해서는 121만 4,000달러까지 지원함.

〈부표 1-9〉 FSA의 융자 프로그램 개요(2018)

구 분	자금 종류	대출 한도	대출기간 및 조건
직접대출	시설 및 농지자금	$300,000	· 상환기간: 40년 · 이자율: 3.75%(변동이자율, 매월 1일에 게시됨.) · 정규 이자율에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임시이자율(temporary limited resource interest rates) 적용 가능 · 대출총액의 1/2를 다른 금융기관에서 공급받는 경우 5% 이자율
	운영자금	$300,000	· 상환기간: 1-7년 · 이자율: 4.125%(변동이자율, 매월 1일에 게시됨.) · 정규 이자율에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임시이자율(temporary limited resource interest rates) 적용 가능
	긴급자금	실제 손실 발생한 100% 범위 대출, 대출한도: 50만달러	· 상환기간: 1-7년 · 부동산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는 40년까지 가능 · 이자율: 3.75%(변동이자율, 2018.08.01.기준)
	빈곤농·신규농 운영자금, 농지구입자금	$300,000	· 상환기간: 운영자금(1-7년), 농지구입자금(40년) · 이자율: 운영자금(변동이자율), 농지구입자금(농업대출기관)
	신규농업인 할부 농지구입자금	농지구입가격 혹은 평가액의 45% 이하	· 상환기간: 20년 · 이자율: 농업대출기관(1.5%-4%)
신용보증	운영자금	$1,399,000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금액 변동)	· 상환기간: 7년 이내 · 이자율: 농업대출기관 평균이자율보다 낮은 수준 · 정규 이자율에서 상환이 어려운 경우 4%의 이자율 할인 가능
	농지구입자금	$1,399,000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금액 변동)	· 상환기간: 40년 · 이자율: 농업대출기관 평균이자율보다 낮은 수준
	빈곤농 및 신규농 대출	$1,214,000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금액 변동)	· 상환기간: 운영자금(1-7년), 농지구입자금(40년) · 이자율: 농업대출기관 평균이자율보다 낮은 수준

자료: USDA Farm Service Agency, Your Guide to FSA Farm loans, 2012

○ 최근 4년간 FSA의 융자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대출건수는 3만 7,145건(FY 2014)에서 3만 8,408건(FY 2017)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출금액도 52억 3,200달러(FY 2014)에서 59억 8,900달러(FY 2017)로 증가하였음.

○ 프로그램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운영자금의 직접대출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설 및 농지자금의 직접대출, 운영자금의 신용보증, 시설 및 농지자금의 신용보증의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그러나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시설 및 농지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실적이 가장 높으며 운영자금의 신용보증이 그 뒤를 잇고 있어 직접대출보다는 신용보증으로 지원된 자금 규모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부표 1-10〉 FSA 융자 실적

단위: 건, 백만 달러

융자종류	FY 2014		FY 2015		FY 2016		FY 20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설 및 농지자금 (직접대출)	5,522	1,000	5,580	1,008	5,645	1,017	5,740	1,044
운영자금 (직접대출)	22,731	1,201	22,681	1,251	23,577	1,339	22,940	1,284
시설 및 농지자금 (신용보증)	4,584	2,013	4,389	2,041	5,065	2,471	4,663	2,279
운영자금 (신용보증)	4,131	1,000	4,835	1,365	4,982	1,493	4,941	1,367
환경보전 시설자금 (신용보증)	-	-	1	1	2	1	-	-
긴급자금	177	18	124	13	376	43	124	15
합계	37,145	5,232	37,610	5,680	39,647	6,365	38,408	5,989

자료: USDA/FAS (www.fsa.usda.gov)

○ 지원방식에 따른 대출규모를 비교하면 직접대출 대상에 비해 신용보증 대상이 상대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음.

- 직접대출의 경우 시설 및 농지자금보다는 운영자금 지원 규모가 큰 반면 신용보증 대상은 주로 시설 및 농지자금을 지원받는데 FSA를 활용하고 있음.
- 동일한 용도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직접대출 받는 경영체보다 신용보증을 받는 경영체의 건당 대출금액이 더 큼.

○ 다시 말하면, 미국 FSA는 자력으로 민간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농업경영체를 지원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형편에 있는 농업경영체는 신용보증, 불리한 형편에 있는 농업경영체는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정책자금 졸업제도

○ 미국 FSA는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FSA의 역할을 임시적인 자금 지원처로 한정하고 있음.

- FSA는 융자 프로그램별로 지원기간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의 재무상황이 개선되면 일반 융자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졸업제를 운영하고 있음.

○ FSA 융자의 지원기간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7년(신규진입농은 10년), 시설자금의 경우 10년임.

- 지원기간은 융자의 대출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며 대출이 실행된 연수만큼 지원기간 한도가 소진된 것으로 인식됨.
- 예를 들면, 한 농업인이 1년 동안 1회 이상 운영자금 지원을 받았다면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농업인의 지원가능기간은 6년으로 계산함.
- 지원 기간은 다년간 연속으로 지원받는 경우와 분산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으며 지원 받은 총 연수만 지원가능기간 계산에 이용됨.

○ FSA의 정책자금 졸업제는 농업인이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만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FSA는 정기적으로 피지원농가의 재무상황을 파악하여 정책자금을 일반 금융기관의 융자로 대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가를 일반 금융기관에 중개하여 주고 있음(USDA 2016).

- FSA는 피지원농가의 생산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피지원농가의 경영수지, 재무상태표, 예산안을 요청함.
- 피지원농가는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FSA는 피지원농가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FSA 융자를 상업 융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
- 피지원농가의 경영/재무상태가 상업 금융을 통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판단되면 FSA는 금융기관에 해당 농가의 자료를 제출함.
- 금융기관은 FSA로부터 전달받은 피지원농가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대출인수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FSA에 통보함.
- FSA는 인수 희망 금융기관의 리스트를 피지원농가에 보내고 피지원농가는 30일 이내에 인수 희망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대출 신청서를 제출함.
- 인수 희망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 피지원농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 희망 기관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FSA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 이러한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FSA는 피지원농가의 대출 상환의 독촉 절차를 밟음.

2.2. 일본의 정책금융

2.2.1. 일본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

○ 일본의 농업정책금융 체계는 정부,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보조기관으로 구성됨

- 정부는 농업금융 정책을 기획하고 재원의 조달과 공급, 감독 등의 역할을 맡고 있음.
-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정부출자 독립회사로서 정부의 재정투융자자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지방의 지점과 농협,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함.
-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농협 계통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중앙금고(중앙)-JA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도도부현)·농림중금(현지점)-JA(시정촌)으로 구성됨.
- 신용보증기관은 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협회와 농림어업신용기금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을 차입할 때 신용보증을 제공함.
- 보조기관에는 농림수산장기금융협회와 애그리비지니스투자육성주식회사가 있음.

〈부도 1-5〉 일본의 농업금융 지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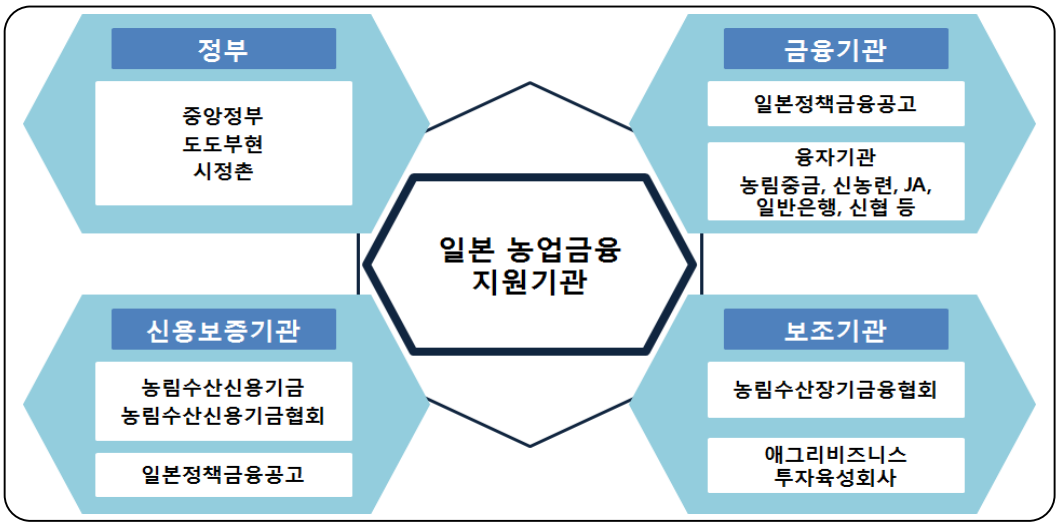

자료: 박준기 외 2명(2011), “선진 농업금융 사례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2. 일본 농업정책자금 개요

가.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은 Super-L자금, 농업 Safety net 자금, 경영체육성강화자금, 진흥산촌·과소지역경영개선자금, 축산경영환경조화추진자금, 특별진흥자금, 자본지원융자, 농업개량자금 등 여덟 개 자금으로 구성됨.

나. 농업근대화자금

○ 농업근대화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자금을 농업자 등에게 대출해 주고, 정부로부터 이차보전을 받는 자금제도임.
- 농협계통기관인 농림중금, 신농련, JA와 은행 등이 대출을 시행함.

○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 인정농업자, 인정신규취농자, 주업농업자, 집락영농조직 등을 대상으로 지원함.
- 자금의 용도는 축사, 농기구 등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에 필요한 시설의 개량, 조성, 복구, 취득, 장기운전자금 등임.

○ 융자조건
- 상환기간은 1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융자한도는 개인 1,800만 엔임(법인 2억 엔).
- 농업근대화자금은 같은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환하게 되어 있음.

〈부표 1-11〉 일본의 농업정책자금 개요

구분	Super-L 자금	농업 Safety net 자금	경영체육성 강화자금	진흥산촌, 과소지역 경영개선자금	축산경영환경 조화추진자금	특별진흥자금	자본지원융자	농업개량자금
목적	농업경영개선	재해, 경제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난 해소	전향적인 투자나 상환부담의 경감	진흥산촌, 과소지역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	가축 분뇨의 처리 및 이용 시설 등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	특별인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규 사업 분야 지원 및 장려	생산·가공·판매의 개선, 품질·수량의 향상 등
대상	인정농업자	인정농업자, 인정신규취농자 등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농업인	농림어업경영개선계획, 농림어업진흥계획을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농업인 등	처리고도화시설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 정비계획을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농업인	특별진흥사업을 실시하는 농업인	신규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법인	에코팜, 6차산업화법의 인증을 받은 농업인
용도	농지, 시설·기계, 과수·가축, 기타경영비 등	재해,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경영악화의 개선	농지, 시설·기계, 과수·가축 등	시설·기계, 과수·가축, 지역자원정비활용시설 등	축사, 농기구개량, 시설 등의 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	농업생산시설, 관광농업시설, 농산물처리가공, 저장보관시설 등	시설·기계 등의 관련 비용	시설·기계개량, 가축·과수, 농지이용권의 취득, 품종전환
융자 한도	[개인] 3억 엔 (특인 6억 엔) [법인] 10억 엔 (특인 20억 엔*) * 특수한 경우 30억 엔까지	[일반] 600만 엔 [특인] 연간 경영 비용 등의 3/12 이내	[개인] 1억 5천만 엔 이내 [법인·단체] 5억 엔 이내	보조사업: 자부담액의 80% 이내 비보조사업: [개인] 1,300만 엔 [법인] 5,200만 엔	부담액의 80~90% 또는 [개인]3,500만 엔~1억 2,000만 엔 [법인]7,000만 엔~4억 엔	부담하는 금액의 80% 이내	자기 자본 비율이 40%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금액 또는 1억 엔	[개인]5,000만 엔 [법인·단체] 1억 5,000만 엔
상환 기간	25년 이내 (10년 거치)	10년 이내 (3년 거치)	25년 이내 (3년 거치)	25년 이내 (8년 거치)	20년 이내 (3년 거치)	15년 이내 (3년 거치)	18년(8년 거치)	12년 이내 (3~5년 거치)

자료: 일본정책금융공고(https://www.jfc.go.jp/n/finance/search/index.html, 2018.09.08. 자료검색)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j/keiei/kinyu/sikin/index.html, 2018.09.08. 자료검색)

다.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Super-S 자금)

○ 농업신용보증기관의 예탁금을 기초자금으로 하고 융자기관의 협조융자 방식을 결합하여 인정농업자에게 저리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함.

- 도도부현의 농업신용기금협회가 융자기관에 예탁한 자금에 대하여 융자기관은 지원대상 예탁금의 4배를 더해서 만든 자금을 융자함.

○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 인정농업자 또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규정하는 농업경영 개선계획을 작성하고 시정촌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지원함.
- 자금은 경영개선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사용됨.

○ 융자조건

- 지원대상별로 이용한도를 정해 놓고 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음.
- 인정농업자는 융자한도액은 개인 500만 엔(법인 2,000만 엔) 축산, 원예 종사자는 개인 2천만 엔(법인 8천만 엔)으로 운용됨.
- 농업신용기금협회에서 무담보 무보증인으로 신용을 보증해줌.

라. 부채정리자금의 지원

○ 차입금 상환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임.

- 주로 정책금융 이외의 부채 정리와 정책금융의 부채 정리로 나눌 수 있음.

○ 정책금융 이외의 부채 정리를 원할 경우

- 농협 등에서 농업경영 부담경감 지원자금을 융자해주며 융자한도는 영농부채의 잔고이며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임(필요에 따라 최대 15년 이내).

○ 정책금융 부채의 정리를 원할 경우
- 일본정책금융공고로부터 경영체 육성 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상환기간은 25년 이내임.

2.2.3.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 일본 정책금융자금의 금리는 법률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임.

○ 법정(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를 대출자에게 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 이차보조방식으로 운영됨.
- 이차보조자금은 농림수산장기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농산어촌진흥기금으로 충당됨.

〈부표 1-12〉 일본은 정책금융자금의 금리(2018. 08. 20. 기준)

자금명	금리(%)	용도
농업개량자금	무이자	후계자, 신기술 투자 등
농업경영기반강화(Super-L)자금	일반: 0.25~0.40 특례: 0(대출일부터 5년 까지)	농업경영기반강화
경영체육성강화자금	0.40	인정농업자 이외의 농업인이 이용하는 자금
농림어업Safety net자금	0.25	재해, 사회·경제적 변동 등에 따라 자금이용의 어려움에 처한 농림어업경영체
농림어업시설(Super-W)자금	0.40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에 필요한 특정의 시설
임업기반강화자금	0.25~0.55	인공식재, 천연림 개량, 간벌재 등
어업경영개선지원자금	0.40~0.55	어선 및 어구, 어업용 시설 등
특정농산물가공자금	0.25~0.60	특정 농산물의 가공에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등
식품유통개선자금 (생산과 제조의 제휴, 생산과 판매의 제휴)	0.25~0.45	식품제조업자, 식품판매업자 등이 농림어업자 등과 제휴하여 시설정비 등에 이용하는 자금

자료: 일본정책금융공고(https://www.jfc.go.jp/n/rate/rate.html, 2018.09.08. 자료검색)

○ 일본의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는 2018년 8월 20일 기준 무이자에서부터 최대 0.60%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대부분 0.20~0.40% 이내의 저리자금으로 운용됨을 알 수 있음.

2.2.4. 일본 농업정책금융의 특징

○ 일본 농업정책금융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일반국민, 중소기업, 농림수산 경영체를 총괄한 정책금융 전담기구(일본 정책금융공고)가 전국적인 대출 창구를 가지고 자금을 지원함.

○ 둘째, 정책금융으로 지원되는 자금은 이자를 법률로 정해 놓고 있으며 직접 대출, 대리대출 방식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 차입자에 대한 이자보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셋째,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
- 중점 육성 대상자, 신규 진입자, 경영곤란에 처한 농가로 지원 대상을 구분함.
- 중점 육성대상자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인정농업자와 인정취업자임.
- 신규 진입자는 영농후계자와 귀농인을 포함함.

○ 일본 정책금융은 농업 분야 지원에 있어서 민간과 정부를 구분짓지 않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영역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운영됨.

3. 시사점

○ 타 분야와 해외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금별 지원대상이 명확하다는 점임.
-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업력을 바탕으로 자금별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미국의 농업정책금융기관은 신규 농가,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 등 신용능력이 약한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신규 진입자와 경영곤란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자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미국의 농업정책자금 동향은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농업인이 정책자금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책자금이 민간 금융기관 자금을 이용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음.
- 또한 FSA와 중소기업 관련 정책금융 시스템은 정책자금 졸업제를 도입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경영위기 농가(또는 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부채를 대환하여 주는 방식이 아닌 신규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식품부의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등 경영위기 해소를 위한 신규지원 뿐 아니라 기존의 부채를 대환, 경영위기농가 시설 인수 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음.

○ 타 분야 또는 해외사례는 농업종합자금의 역할과 지원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첫 번째, 타 정책자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종합자금은 지원대상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진입농가, 취미농 등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사업별로 사업단계 및 사업대상을 세분화하고 있고, 이미 농식품부 정책사업이 귀농, 후계농 등 신규진입, 경영위기 등 단계별 지원자금이 구분되어있으므로 농업종합자금의 중점적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정책자금의 지원 횟수 제한, 정책자금 졸업제 등을 도입하여 농업경영체의 정책자금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 정책자금 졸업제와 정책자금 지원 제한은 신규 수혜자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업체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함.
- 지원대상자가 고정적으로 정책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수혜자가 정책자금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또는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경영체가 자금을 지원받게 됨.

부록 2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1. 일반사항과 농가경제 기본현황

○ 설문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분야인 원예, 특작, 채소, 축산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농가 수는 299농가 이며 연령과 영농경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농가 수는 297농가임.

- 농가의 평균 연령은 약 66세로 나타났으며, 최소 연령은 35세, 최대 연령은 94세임.
- 영농경력의 경우 20년 이상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14년, 5-9년, 15-19년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영농경력을 살펴본 결과 영농경력 20년 이상의 55-64세 농업인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부표 2-1〉 설문조사 참여농가 연령 및 영농경력 교차표

구분		영농경력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합계
연령	35-44세	2	2	4	0	8
	45-54세	4	6	6	13	29
	55-64세	11	17	11	86	125
	65-74세	16	15	7	62	100
	75세 이상	1	1	4	29	35
	합계	34	41	32	190	297

주: 무응답= 2농가

○ 응답자의 영농 분야는 주로 과수이며 그 다음으로 채소, 특용작물, 축산 순으로 이어짐.

- 응답한 299 농가 중 46.8%가 과수 농사를 짓고 있으며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는 23.7%에 이름.

〈부표 2-2〉 설문조사 참여농가 농사종류

항목	빈도수[주1)]	비중(%)[주2)]
수도작, 전작(복합영농)	15	5.0
과수	140	46.8
채소	71	23.7
화훼	10	3.3
축산	41	13.7
특용작물	49	16.4
합계	326	109.0

주: 1) 중복응답 포함.
2) 무응답자를 제외한 농가에 대해서 비중을 구함(설문응답자: 299농가 기준).

○ 응답 농가는 국내 농가전체의 영농규모보다 다소 큰 규모의 농가들임.
- 농업 재배면적에 대한 설문결과, 3,000평 미만의 농가가 41.6%를 차지하였고 3,000평 이상 9,000평 미만의 농가가 41.3%, 9,000평 이상 15,000평 미만의 농가가 8.4%를 차지하였음.
-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비슷한 면적 대의 농가수 분포를 살펴보면 각각 49.0%, 36.3%, 7.4%를 차지하였음.
- 두 결과를 비교해보면 이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3,000평 미만의 농가는 적고, 3,000평 이상의 농가는 많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농업 시설면적의 경우 276농가가 응답하였고 시설면적이 없는 농가가 많았음.
- 시설면적이 없는 농가는 전체 응답자의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30.4%가 1,000평 미만, 13.8%가 1,000평 이상 3,000평 미만의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가의 경우 대부분이 사육하는 가축이 거의 없으며,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소, 돼지 등이 아닌 기타 가축의 분포가 높았음.

〈부표 2-3〉 설문조사 참여농가의 농업 현황

구분	항목	빈도수	비중(%)
설문조사 참여농가 농사종류[주1)]	수도작, 전작(복합영농)	15	5.0
	과수	140	46.8
	채소	71	23.7
	화훼	10	3.3
	축산	41	13.7
	특용작물	49	16.4
	합계	326	109.0
설문조사 참여농가 농업 재배면적 현황[주2)]	3,000평 미만	124	41.6(49.0)[주3)]
	3,000-9,000평 미만	123	41.3(36.3)
	9,000-15,000평 미만	25	8.4(7.4)

(계속)

구분	항목		빈도수	비중(%)
	15,000-30,000평 미만		14	4.7(5.4)
	30,000평 이상		11	3.7(2.0)
	해당 없음		1	0.3
	합계		298	100
설문조사 참여농가 농업 시설면적 현황[주4)]	1,000평 미만		84	30.4
	1,000-3,000평 미만		38	13.8
	3,000-6,000평 미만		10	3.6
	6,000평 이상		3	1.1
	해당 없음		141	51.1
	합계		276	100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 규모[주5)]	소	50두 미만	19	6.4
		50-100두	6	2.0
		100-200두	7	2.3
		200두 이상	0	0.0
	돼지	500두미만	0	0.0
		500-1,000두	0	0.0
		1,000-2,000두	0	0.0
		2,000두 이상	1	0.3
	닭+오리	10,000수 미만	7	2.3
		10,000-30,000수	1	0.3
		30,000-50,000수	0	0.0
		50,000수 이상	0	0.0
	기타 가축		39	13.0
	해당 없음		164	54.8

주: 1) 중복응답 포함, 무응답자를 제외한 농가에 대해서 비중을 구함(설문응답자: 299농가 기준).
2) 무응답= 1농가
3) 괄호안은 농가경제조사 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면적별 농가비중임.
4) 무응답= 23농가
5) 중복응답 포함.

○ 설문농가의 연간 농축산물 총 판매액에 대한 조사결과 1천-3천만 원 미만인 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천만 원 미만, 3천-5천만 원 미만 순으로 나타남.

○ 농가의 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총 297농가가 응답하였으며 90%이상의 농업소득 비중을 가진 농가가 전체 응답자의 40% 가량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았으나 농업소득이 30%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는 농가도 상당수 포함되었음.

○ 응답농가의 자산규모는 비교적 큰 편인데, 총 자산규모1~3억 원 미만의 비중이 33.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5억 원, 5~10억 원 순으로 낮아짐.

〈부표 2-4〉 설문조사 참여농가의 농업소득 및 자산 현황

구분	항목	빈도수	비중(%)
작년 한 해 동안 농축산물 총 판매액[주1)]	1천만 원 미만	58	21.1
	1천-3천만 원	67	24.4
	3천-5천만 원	56	20.4
	5천만-1억 원	50	18.2
	1억-3억 원	35	12.7
	3억-5억 원	6	2.2
	5억 원 이상	3	1.1
	합계	275	100
작년 한 해 동안 농가의 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주2)]	10% 미만	26	8.8
	10-30%	43	14.5
	30-50%	39	13.1
	50-70%	27	9.1
	70-90%	39	13.1
	90-100%	61	20.5
	100%	62	20.9
	합계	297	100
농가의 현재 총 자산규모 (토지, 건물, 현금 등)[주3)]	1억 원 미만	21	7.1
	1억-3억 원	98	33.1
	3억-5억 원	77	26.0
	5억-10억 원	71	24.0
	10억 원 이상	29	9.8
	합계	296	100

주 1) 무응답= 24농가
2) 무응답= 2농가
3) 무응답= 3농가

2. 농업종합자금 이용 실태 및 의견

○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295농가가 응답하였으며 농업종합자금을 알고 있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모르는 농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농업종합자금을 잘 모르는 농가 수는 112농가로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농가가 많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부표 2-5〉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인식여부

항목	빈도수	비중(%)
농업종합자금을 알고 있음	183	62.0%
농업종합자금을 잘 모름	112	38.0%
합계	295	100.0%

주: 무응답= 4농가

○ 시설 관련 및 운전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부표 2-6〉 최근 5년간 시설 및 운전자금의 목적으로 농업종합자금의 신청여부

항목	빈도수	비중(%)
신청한 적 있음	112	37.8%
신청하지 않음	184	62.2%
합계	296	100.0%

주: 무응답= 3농가

3. 농업종합자금 신청 농가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농업종합자금 신청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총 112가구로 나타남.

-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대출금의 용도를 살펴본 결과 103농가가 응답하였음.
- 대부분 운영자금과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대출금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부표 2-7〉 농업종합자금 대출금의 용도

항목	빈도수[주1)]	비중(%)[주2)]
운영자금	57	55.3
생산, 재배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38	36.9
농기계 구입	52	50.5
토지매입비 또는 토지임차료	11	10.7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6	5.8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	4	3.9
스마트팜 시설 설치	0	0.0
기타	2	1.9

주 1) 중복응답 포함.
2) 설문응답 농가에 대해서 비중을 구함(설문응답= 103농가 기준).

○ 최근 5년간 농업종합자금을 통해 받은 대출조건과 대출금액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음.

〈부표 2-8〉 농업종합자금 대출조건과 대출금액

항목	이자율		대출기간		대출금액	
	평균 이자율 (%)	건 수	평균 대출기간 (년)	건 수	평균 대출금액 (만 원)	건 수
운영자금	2.23	41	4	36	2,903	43
생산, 재배시설 설치	4.50	11	9	10	7,500	10
생산, 재배시설 개보수	2.00	3	9	3	1,333	3
농기계 구입	3.54	28	8	32	2,076	34
토지매입(임차)비	1.80	5	15	5	11,600	5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2.00	1	3	1	12,000	1
농산물 가공시설 개보수	1.50	1	1	1	500	1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	-	-	-	-	-	-
스마트팜 시설 설치	-	-	-	-	-	-
기타	1.64	4	11	4	8,042	6

주: 중복응답 포함.

○ 농합종합자금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타 융자보다는 대출조건이 좋은 점에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마땅한 정부의 융자사업이 없다는 이유로 나타남.

〈부표 2-9〉 농업종합자금을 선택한 이유

항목	빈도수
타 융자보다 대출조건이 좋음	50
마땅한 다른 정부 융자사업이 없음	23
자금지원이 신속함	12
필요한 자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음	8
담보능력보다는 사업성으로 평가하기 때문임	6
일반은행 대출이나 정부융자 자금한도가 차서임	2
기타	2

주: 설문응답= 95농가, 중복응답 포함.

○ 농업종합자금 신청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신청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이 1순위로 지적됨.

- 다음으로 신청절차가 복잡한 점과 심사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점이 지적됨.

〈부표 2-10〉 농업종합자금 신청과정의 어려운 점

항목	빈도수
신청서류가 너무 많음	58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함	38
심사기준을 맞추기 어려움	34
경영장부,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서류 작성이 어려움	34
담보 또는 농신보 신용보증 부족	23
자금 수령 시간이 오래 소요됨	15
기타	7
실제 자금용도와 자금 지원 대상이 다름	3

주: 설문응답= 94농가, 중복응답 포함.

○ 농업종합자금 제출 서류 중 중복되어 불필요한 항목을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농지원부 등의 순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음.

〈부표 2-11〉 농업종합자금 제출 서류 중 불필요한 항목

항목	빈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35
농지원부	34
주민등록등본	30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25
최근월말 합계잔액시산표	25
재무제표(필요시)	24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검토의뢰서	21
사업계획서	20
기초경영조사표	18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필요시)	16

(계속)

항목	빈도수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업장)	15
토지,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4
[대출상담 기초설문]상 근거자료 제출서류	13
거래확인서	12
축산업등록증(4대축종인경우)	10
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8
인삼경작확인서(인삼식재자금)	5

주: 설문응답= 83농가, 중복응답 포함.

○ 농업종합자금 사업계획서 작성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103농가가 응답하였으며 보통인 의견이 많으나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음.

〈부표 2-12〉 농업종합자금 사업계획서 작성의 만족도

항목	빈도수	비중(%)
매우 쉬움	2	1.9
쉬움	7	6.8
보통	43	41.7
어려움	38	36.9
매우 어려움	13	12.6
합계	103	100

주: 설문응답= 103농가

○ 농업종합자금으로 신청한 자금의 경우 대출실행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본 결과 80농가가 응답하였고 평균 23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2-13〉 농업종합자금으로 신청한 자금의 경우 대출실행까지 걸린 기간

항목	평균 기간(일)	최소 기간(일)	최대기간(일)
소요기간	23일	1일	168일

주: 설문응답= 80농가

○ 자금 수령 후 경영실태조사를 받은 경우와 경영실태조사 효과를 살펴본 결과 100농가가 응답하였으며 경영실태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음.

〈부표 2-14〉 농업종합자금 수령 후 경영실태조사 실시 유무와 농가경영 개선에 도움된 정도

항목	빈도수	비중(%)
경영실태조사를 받은 적 없음	55	60.4
경영실태조사를 받았으나 경영에 별 도움 안됨	24	26.4
경영실태조사를 받았으며 경영에 도움이 됨	12	13.2
합계	91	100

주: 설문응답= 91농가

○ 농업종합자금의 대출과정에서 담보심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28.8%가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반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12.9%에 불과하였음.

〈부표 2-15〉 농업종합자금 대출과정에서 담보심사에 대한 만족도

항목	빈도수	비중(%)
매우 불만족	5	5.0
불만족	24	23.8
보통	59	58.4
만족	11	10.9
매우 만족	2	2.0
합계	101	100

주: 설문응답= 101농가

○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신보 신용보증을 이용한 유무를 살펴본 결과 104농가가 응답하였으며 농신보 신용보증을 이용하지 않은 농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냄.

○ 농업종합자금의 농신보 이용여부 및 농신보 심사의 적합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대체적으로 농신보 심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응답자의 36%가 '적합합' 또는 '매우 적합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부적합함' 또는 '매우 부적합함'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하였음.

〈부도 2-1〉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시 농신보 신용보증의 이용여부 및 농신보 심사평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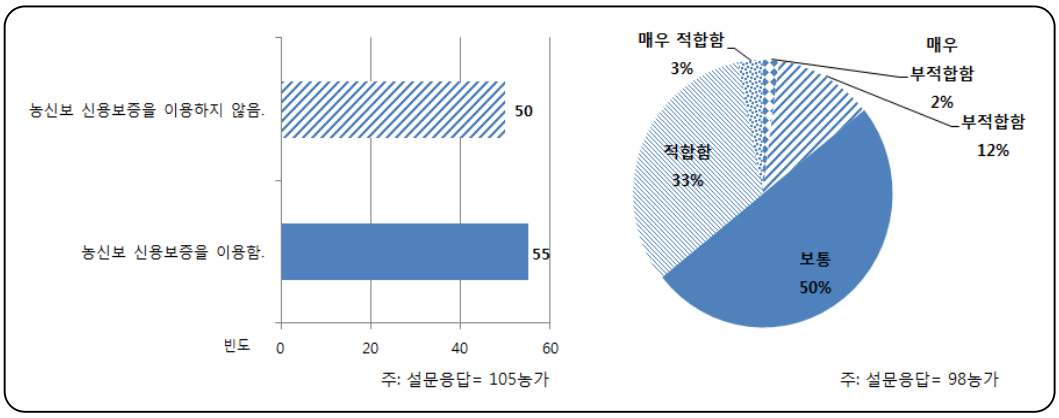

○ 농업종합자금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101농가가 응답하였으며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부표 2-16〉 농업종합자금 운영에 있어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

항목	빈도수	비중(%)
매우 그렇지 않음	5	5.0
그렇지 않음	19	18.8
보통	29	28.7
그러함	44	43.6
매우 그러함	4	4.0
합계	101	100

주: 설문응답= 101농가

○ 농업종합자금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서류의 간소화가 1순위로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부표 2-17〉 농업종합자금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항목	빈도수
서류의 간소화	65
대출금리 인하	57
담보 인정 비율 상향 조정	43
대출한도 증액	35
농신보 보증비율 상향 조정	30
대출기간 확대	29
사업계획서 및 경영기록 작성 지원	20
경영실태조사확대(횟수및적용대상)	13
심사기간 단축	11

주: 설문응답= 103농가, 중복응답 포함.

4. 농업종합자금 비 신청 농가의 의견

○ 농업종합자금 신청 경험이 없는 농가는 총 184가구로 나타남.
-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한 경험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함.
- 163농가가 응답하였으며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다수 농가가 정부 자금 대출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2-18〉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항목	빈도수	비중(%)
정부 자금 대출 필요 없음	68	41.7
농업종합자금에 대해 알지 못함	44	27.0
타 정책자금보다 대출조건이 불리함	6	3.7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18	11.0
농업종합자금의 지원용도가 실제 자금용도와 맞지 않음	23	14.1
기타	4	2.5
합계	163	100

주: 설문응답= 163농가

○ 농업종합자금 외 신청한 타 융자자금을 살펴본 결과 주로 타 자금을 신청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종합자금이 아닌 타 정책자금을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타 정책자금의 대출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부표 2-19〉 농업종합자금 외 타 융자자금 신청여부 및 신청사유

구분	항목	빈도수
농업종합자금 외 신청한 타 융자자금[주1)]	타 자금을 신청한 적 없음	93
	농축산경영자금	24
	기타	21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14
	원예시설현대화사업	4
	축사시설현대화	4
타 정책자금을 선택한 이유[주2)]	해당 자금의 대출조건이 유리함	13
	해당 자금이 종합자금보도 용도 면에서 적합함	13
	해당 자금은 보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음	12
	심사나 자격조건이 덜 까다로움	9
	기타	8
	신청절차가 덜 복잡함	6
	신청서류가 적음	3

주 1) 설문응답= 153농가, 중복응답 포함.
2) 설문응답= 63농가, 중복응답 포함.

5. 농업종합자금 대출조건의 개선사항(자금 신청여부 관계없음)

○ 농업종합자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종합자금 대출조건의 현실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57농가가 응답하였고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농업종합자금이 현실성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대출기간과 한도가 실제 자금 이용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음.

〈부도 2-2〉 농업종합자금 대출조건의 현실가능성 유무 및 현실성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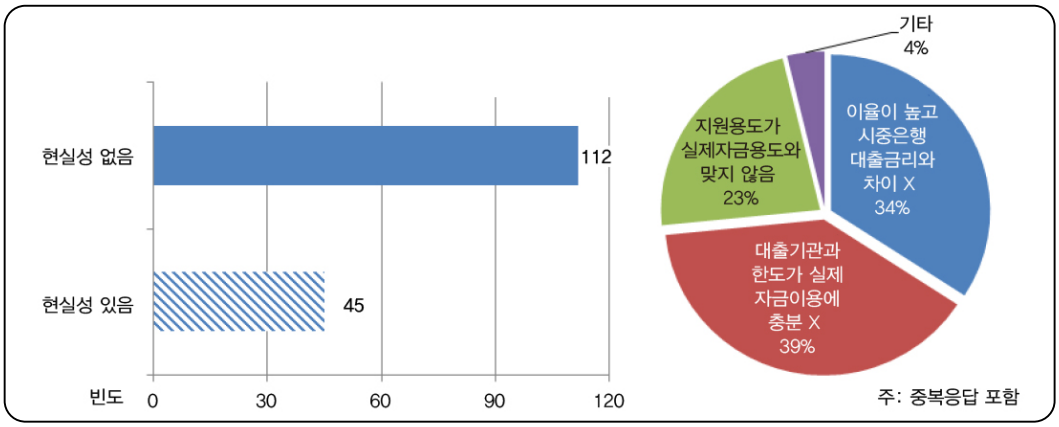

주: 무응답= 142농가

○ 추가적으로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였으면 하는 자금을 조사해본 결과 추가적인 자금은 별도로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음.

〈부표 2-20〉 추가적으로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였으면 하는 자금의 필요 여부

항목	빈도수	비중(%)
추가적인 지원 분야의 자금이 필요함	57	24.6
추가적인 지원 분야의 자금이 필요 없음	175	75.4
합계	232	100

주: 무응답= 67농가

6. 향후 투자수요

○ 향후 농업에 대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83농가가 응답하였으며 농산물 시장 경기는 지금도 나쁜 상태이며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부표 2-21〉 향후 농업에 대한 전망

항목	빈도수	비중(%)
농산물 시장 경기는 지금도 나쁜 상태이며 앞으로 더 나빠질 것임.	121	42.8
농산물 시장 경기는 지금도 나쁜 상태이며 현 상태가 지속될 것임.	87	30.7
농산물 시장 경기가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것임.	47	16.6
농산물 시장 경기가 지금은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는 나빠질 것임.	7	2.5
농산물 시장 경기가 지금은 나쁘지 않으며 현 상태가 지속될 것임.	11	3.9
농산물 시장 경기가 지금은 나쁘지 않으며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임.	10	3.5
합계	283	100

주: 무응답= 16농가

○ 향후 5년 내에 농업에 투자할 의향과 투자금액에 대해 살펴본 결과 278농가가 응답하였으며 대부분 투자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2-22〉 향후 5년 내에 농업에 투자할 의향과 투자금액

항목	빈도수	비중(%)
3천만 원 미만	65	23.4
3천만-5천만 원 미만	26	9.4
5천만-1억 원 미만	36	12.9
1억-3억 원 미만	21	7.6
3억-5억 원 미만	4	1.4
5억 원 이상	2	0.7
투자 의향 없음	124	44.6
합계	278	100

주: 무응답= 21농가

○ 투자의향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투자분야를 조사한 결과 영농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부표 2-23〉 향후 5년 내에 농업에 투자할 분야

항목	빈도수[주1)]	비중(%)
영농규모 확대(농지구입, 소, 돼지 등 구입, 대식물 식재 등)	48	30.2
농기계 구입	20	12.6
영농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하우스 및 유리온실 등)	49	30.8
비농업투자(겸업투자, 부동산 등)	15	9.4
단기 운영자금(인건비, 영농자재 구입 등)	27	17.0
합계	159[주2)]	100

주: 1) 무응답= 139농가
2) 본 질문의 응답으로 1농가가 중복선택을 하여 1농가의 응답을 제외함.

○ 투자자금으로서 농업종합자금의 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168농가가 응답하였으며 투자자금으로 농업종합자금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농업종합자금 외에 투자자금 마련 방안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저축, 소득 등으로 자체 여유자금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부도 2-3〉 투자자금으로서 농업종합자금의 이용 여부 및 농업종합자금 외 투자자금 마련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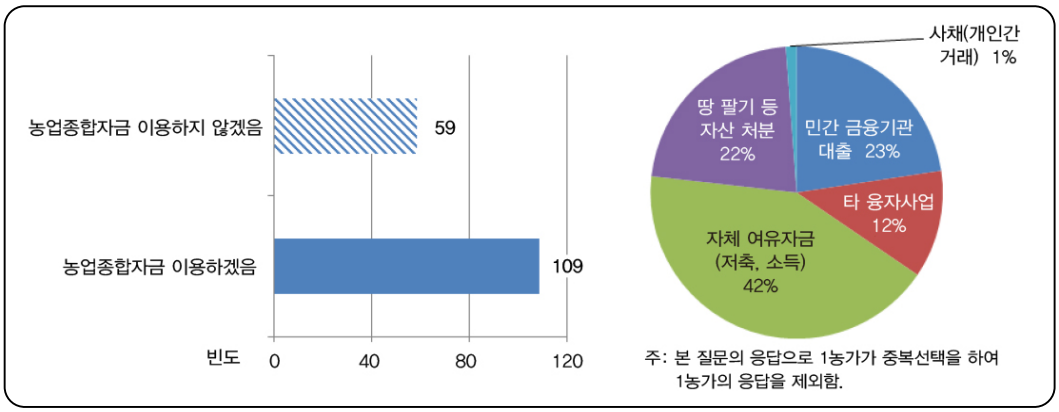

주: 무응답= 131농가

○ 농가가 원활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기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세농, 고령농 위주의 제도 보완으로 나타남.

〈부표 2-24〉 농가가 원활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기 위한 개선사항

항목	빈도수
대출금리 인하	70
영세농,고령농위주의제도보완	63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의 연장	45
담보보다는신용/사업성평가위주의대출	27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23
자금 공급 규모의 확대	11
기타	5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	3

주: 무응답= 69농가, 중복응답 포함.

참고문헌

강종만, 임병철. 2004.『농업정책자금 조달 및 운용방안 개선』. 한국금융연구원.

권영근, 송동홍, 김자경. 2006.『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와 효율적인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농림부 용역보고서.

김미복, 황의식, 임지은. 2014.『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김윤진. 2015.『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정한, 김영도, 이시연. 2015.『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와 효과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2017 성과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2018년 예산 및 기금 운용 사업 설명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년 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업생산지수』.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2018.『농지민원 사례집』.

농협은행.『2018 농업정책자금 대출업무방법』.

농협은행.『농업종합자금 경영실태조사 결과 분석』. 각 연도.

박성재, 김용택, 황의식. 1998.『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황의식, 김은순, 이래정, 김영철. 2000.『농업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재성. 2017.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현황과 과제”.『중소기업 포커스』. 중소기업연구원.

박준기, 박성재, 김미복. 2011.『선진 농업금융 사례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상택, 김준오, 정대희, 한두봉. 2008. “농업종합자금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5권 제2호

중소기업벤처부. 2018.『조직혁신 TF 활동결과 발표문』.

통계청,『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통계청,『2017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황의식, 박준기, 문한필, 양승룡. 2004.『농업종합자금 성과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SDA/FSA. 2012. Your Guide to FSA Farm loans

USDA/FSA. 2017. Your FSA Farm Loan Compass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 “중소기업 정책금융 구조와 이해”.『KB 지식비타민』14-31호.

[인터넷]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j/keiei/kinyu/sikin/index.html)
농협 홈페이지(http://consulting.nonghyup.com/nh_consulting/agricultural/fund009.jsp)
뉴시스통신사(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1_0000200281, 2018.01.11. 자료검색)
미국 농무부USDA/FAS(www.fsa.usda.gov)
은행연합회(http://www.kfb.or.kr/info/cofix.html?S=GB&BasicYear=2011&BasicYear=2010&x=10&y=17)
일본정책금융공고(https://www.jfc.go.jp/n/finance/search/index.html)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contents/apko331100/view.action)
한국은행(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43)